www.moel.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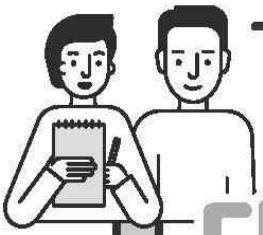

대학일자리센터
시행지침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21. 04.

고용노동부

목 차

Ⅰ. 총 칙 ····· 1

1. 목 적 ····· 3
2. 추진 근거 ····· 3
3. 추진 경과 ····· 3
4. 용어 정의 ····· 4
5.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 4

Ⅱ. 대학일자리센터 사업개요 ····· 7

1. 추진 배경 ····· 9
2. 사업방향 및 주요기능 ····· 9

* <참고1> '21년 대학일자리센터 운영대학 현황 ····· 12
* <참고2> '21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대학 현황 ····· 14

Ⅲ. 세부 운영방안 ····· 15

[1] 지원대학 선정 및 약정체결 ····· 17

1. 사업 추진절차 ····· 17
2. 지원대상 및 신청 ····· 17
3. 선정심사 ····· 19
4.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지원약정 체결 ····· 23

[2] 주요 사업내용 및 운영관리 ····· 25

1. 사업추진 체계 ····· 25
2. 주요 사업내용 ····· 26

* <참고> 대학일자리센터 주요 사업내용(요약) ····· 29

3. 지원내용 및 사업관리 ····· 30
4. 사업비 활용 ····· 33

목 차

3 지원금 관리 및 정산 ····· 43
1. 정부지원금 지급·관리 ····· 43
2. 정부지원금 정산 및 정보공시 ····· 45

4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 47
1. 추진실적 관리 ····· 47
2. 지도점검 ····· 47
* <참고> 대학일자리센터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 ····· 49
3. 성과평가 ····· 50

Ⅳ. 행정사항 및 경과조치 ····· 53
1. 시행시기 ····· 55
2. 경과조치 ····· 55

□ 붙임 및 서식 ····· 57

[붙임 1] '21년도 정부재정지원 가능 대학 명단 ····· 59
[붙임 2] 성과평가 추진계획 ····· 61

[서식 1] 지원신청서 및 관련 사업 수행실적 ····· 68
[서식 2] 사업계획서 ····· 70
[서식 3] 예산집행계획서 ····· 75
[서식 4] 민간전문기관 사업체 현황 ····· 76
[서식 5] 사업계획 기초검토서 ····· 77
[서식 6] 종합 검토의견서 ····· 79
[서식 7] 1차 심사결과표 ····· 80
[서식 8] 지원약정서 ····· 81
[서식 9] 약정변경 신청서 ····· 84
[서식 10] 지원금 신청서 ····· 85
[서식 11] 국고보조금 교부통지 및 교부조건서 ····· 86
[서식 12] 보조사업자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89
[서식 13] 사업정산보고서 및 정산내역서 ····· 90
[서식 14] 정산결과보고서 ····· 92
[서식 15] 대학일자리센터 점검표 ····· 93

Ⅰ. 총 칙

Ⅰ 총 칙

1. 목 적

○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방향·내용, 참여 주체별 역할, 지원내용·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규정

○ 사업 참여대학은 본 지침 및 사업취지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름

2. 추진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고용보험법」 제26조(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고용정책기본법」 제12조(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및 같은 법 제25조(청년의 고용촉진 지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3(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제공)

3. 추진 경과

○ ’15. 6월, 「인문계 전공자 취업촉진방안」(관계부처 합동)에 포함
○ ’15. 7월, 「청년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
○ ’15.10월, 상명대 등 21개 대학 선정(시범사업)
○ ’16. 2월, 건국대 등 20개 대학 추가선정 → 전국 41개교 운영
○ ’17. 2월, 명지대 등 20개 대학 추가선정 → 전국 61개교 운영
○ ’17. 10월, 삼육대 등 소형사업 10개 대학 추가선정 → 전국 71개교 운영
○ ’18. 2월, 국민대 등 소형사업 30개 대학 추가선정 → 전국 101개교 운영
○ ’19. 4월, 계원예술대 등 소형사업 4개 대학 추가선정 → 전국 105개교 운영
○ ’20. 4월, 한국교통대 등 소형사업 5개 대학 추가선정 → 전국 108개교 운영
○ ’21. 3월, 지원기간 만료 대학 운영 종료 → 전국 84개교 운영

※ ’21. 3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대형 9, 소형 7개 신규선정 → 전국 16개교 운영

4. 용어 정의

○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이라 함은 고용노동부, 대학,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 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 기능의 일원화 및 지역 청년고용거버넌스 구축·운영을 통해,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 「지원대학」이라 함은 공모·심사 등을 통해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고용센터와 지원약정을 체결한 후, 학내에 '대학일자리센터'(대·소형 포함)를 운영하는 대학을 말함

○ 「대학일자리센터」(이하 '센터')라 함은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알선, 청년고용정책 홍보, 권역별 협력체계 구축 등 청년 대상 취업지원 사업을 위해 지원대학 내에 설치된 조직을 말함

※ **대형 :** 사업비 6억 내외, 자대생 대상 서비스 및 지역청년고용거버넌스 기능 포함
소형 : 사업비 2억 내외, 자대생 중심 서비스(지역거버넌스 기능 자율)

※ 대학일자리본부 등 대학별 상황에 따라 명칭을 일부 달리할 수 있음

5.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5-1. 고용노동부(본부)

○ 대학일자리센터 추진계획 수립, 시행지침 작성·개정 및 해석, 사업 공모 및 심사·선정, 평가 등 사업의 총괄 관리

○ 현장방문·워크숍 등 소통, 제도개선, 관계부처 협업 등 사업 전반

5-2. 고용(복지+)센터

○ **(청·대표지청 고용센터)** 지방청 관내(지청 포함) 대학일자리센터 선정심사(1차) 및 평가 참여, 권역 내 사업운영 관련 총괄 조정

○ **(관할 고용센터)** 관할구역 내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운영 점검·지원

- 우선협상대학과의 협상 및 지원약정서 체결, 정부지원금 지급 등

- 지역 내 지원대학·자치단체·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및 연계·협업 지원
- 지역 내 참여 대상기관 및 청년층에 대한 사업안내·홍보
- 워크넷 활용 등 지원대학의 자체 프로그램 운영역량 강화 지원
- 지원대학의 사업운영 실태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 및 사후정산

○ 기타 지원대학의 센터운영과 관련한 요청사항에 대한 적극 협조

5-3. 한국고용정보원(총괄지원기관)

○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상황 모니터링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제도 개선 아이디어 발굴, 센터 운영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 사업운영 관련 조사·분석, 평가지표 개발 및 연차평가 총괄

○ 지원대학의 진로·취업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대학별 맞춤형 컨설팅, 관리자·담당자 및 컨설턴트 등 관계자 역량강화 지원

- 대학이 활용 가능한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콘텐츠 개발·보급

○ 기타 사업 개선을 위한 분석·연구 등 고용노동부에서 요청하는 사항

5-4. 지원대학

○ 지원대학은 본 시행지침 및 지원약정서의 내용과 취지를 바탕으로 자체 사업계획서에 따라 대학 자율적으로 센터를 운영

○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한 공간·시설·장비 등 인프라 확보 및 사업비용(매칭) 부담

○ 대학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 관련 교과과정 개편, 유사기능 및 프로그램 조정, 정보제공 등 대학 내 진로·취창업 관련 부서 및 단과대학·학과 등과의 유기적 연계 주도

○ 청년고용정책 안내·홍보, 참여자 모집 및 고용센터(운영기관) 연계

- 재학생, 졸업생, 타대생, 인근지역 청년 등에 대한 진로취업상담·컨설팅, 청년정책사업 안내·홍보,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등 연계(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탐방, 청년친화강소기업,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청년지원정책)

○ 고용(복지+)센터, 자치단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과의 지역 청년고용거버넌스 구축 및 협업사업 기획·운영(소형사업 운영대학의 경우 의무사항은 아니며, 대학 자율적으로 참여 가능)

○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관련, 추진실적·운영현황 보고 등 고용노동부 및 관할 고용(복지+)센터 요청사항에 대한 협조

5-5. 지방자치단체

○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용 지원(매칭)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정부청년고용정책 홍보·안내 협조

○ 고용(복지+)센터, 지원대학,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역산업계 등 관련 유관기관과의 지역청년고용거버넌스 구축·운영 협조 및 지원

○ 고용(복지+)센터 및 지원대학의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서비스 운영 지원

○ 대학일자리센터 선정 및 평가지원 등 고용노동부 본부 및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요청한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한 협조

5-6.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 지역산업계·대학 등과 협업하여 지역 내 업종별 인력수요·공급 현황조사 및 결과 공유 등 협력사업 진행

○ 고용(복지+)센터, 자치단체, 대학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산업계 수요와 대학의 인력공급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Ⅱ. 대학일자리센터 사업개요

Ⅱ 대학일자리센터 사업개요

1. 추진 배경

○ 저학년부터의 **체계적인 진로지도와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청년층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 촉진을 위해 **대학일자리센터 도입**('15.10~)

○ **'13년까지 7% 수준**을 유지하던 **청년실업률**이 **'14년 이후 지속적으로 9% 수준을 상회**하는 등 **청년실업 심각**

⇒ **청년고용지원이 중요 정부정책과제로 설정**

- **저성장 및 코로나 19 확산 등으로 인한 경기 악화와 고용침체**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정체**된 반면, **높은 대학진학률**과 신규 청년구인 규모 등의 급감으로 인한 **청년실업 증가 등 취업난 가중**

○ 청년은 **졸업에 임박**해 **취업 준비**, 대학은 **진로·취업지원 인프라**에 대한 자발적 **투자 여력 부족** ⇒ **청년 대상 공공고용서비스 지원 필요**

- 청년이 저학년부터 조기 진로탐색 및 경력개발계획 수립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진출희망 업·직종과 관련한 직무역량을 쌓고 구직에 임할 수 있도록 수년간 지속 맞춤 관리 및 지원 필요

2. 사업방향 및 주요기능

2-1. 사업 기본방향

○ 대학 내 분절된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기능의 **공간적 일원화** 및 **기능적 연계** 등 **원스톱 서비스체제 구축** 지원을 통해 대학의 취·창업 지원역량 강화 및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 지원

※ 취업지원관·대학청년고용센터·IPP센터(고용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여가부), 현장실습지원센터(교육부), 창업지원기능(중기부 등), 대학 자체 취업지원부서 등

○ 대학일자리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지역단위 청년고용 촉진 사업**의 **핵심적 전달체계**로 활용

2-2. 대학일자리센터의 주요기능

○ ①**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기능 통합·연계 및 ②**대학 밖**의 지역 공공고용서비스 기능과의 **거버넌스 구축**

① **(대학 내)** 대학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취·창업 지원, 산학협력, 진로교육, 상담기능** 등의 **공간적 통합 또는 기능적 연계**로 재학기간 전반에 걸친 종합경력개발 지원

- 대학 **저학년부터** 적성·전공 등을 고려한 **조기 진로지도** 강화
-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청년·기업 지원제도 등 **정부의 주요 청년일자리사업 전반**에 대한 **홍보 등 핵심 전달체계**로서의 기능
-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 조직의 인적·물적 규모 확대를 통해 자대생·졸업생뿐만 아니라, **타대생 및 인근지역 청년**들에게까지 고용서비스 확대

② **(대학 밖) 고용(복지+)센터, 자치단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역산업계** 등과의 연계·협업을 통한 **지역청년고용거버넌스** 구축 및 지역단위 **공동 협력사업** 발굴·추진

- 인근지역 청년(타대생, 특성화고 등 고졸(예정) 청년 등)에 대한 진로·취업 상담·특강, 경력개발컨설팅, 정책 안내 등 청년고용서비스 제공

2-3. 사업기간 및 주요 지원내용

○ **(사업기간) 최대 5년간** 지원

※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유형 변경(대형↔소형), 지원 중단 또는 추가 기간(1년) 연장 지원 등

○ **(회계연도)** 매년 **3월부터 익년 2월말**까지(대학 회계연도 적용)

○ **(지원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 **(사업규모)** '21년 대학일자리센터 84개교(대형 40, 소형 44)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16개교)와 연계 운영

- **(대형)** 사업비 연간 6억원 내외

구 분	매칭 방식	비 고
사업비(6억)	**정부 50%**, 대학·지자체 매칭 비율은 자율조정 가능	지자체 매칭은 필수요건임

※ 재학생수 5,000명 미만 대학은 사업비 감액 지원(연간 사업비 5억원 적용)

- **(소형)** 사업비 연간 2억원 내외

구 분	매칭 방식	비 고
사업비(2억)	**정부 50%**, 대학·지자체 매칭 비율은 자율조정 가능	지자체 매칭은 필수요건임

○ **(지원내용)** 인건비, 프로그램비, 운영경비

- 사업비 일부(1억원 이상)는 공모, 제안, 아이디어 접수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파악을 통해 선정된 프로그램의 사업화에 활용(대형)

- '17년 이후 선정대학(대·소형)은 4년차부터 정부지원금 감액

* **전체 사업비 대비 4년차 45%, 5년차 40%, 6년차(인센티브 대학) 40%**
☞ **예시) 대형(6억): 4년차 2.7억, 5년 및 6년차 2.4억 지원**

참고1 '21년 대학일자리센터 운영대학 현황

연번	지역	대학명	대소형
1	서울	상명대학교	대형
2	서울	성균관대학교	소형
3	서울	건국대학교	대형
4	서울	세종대학교	대형
5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대형
6	서울	명지대학교	대형
7	서울	서일대학교	대형
8	서울	삼육대학교	대형
9	서울	국민대학교	대형
10	서울	인덕대학교	소형
11	서울	덕성여자대학교	소형
12	인천	인하대학교	대형
13	경기	부천대학교	대형
14	경기	대진대학교	대형
15	경기	경복대학교	소형
16	경기	한국항공대	소형
17	경기	김포대학교	소형
18	경기	한세대학교	소형
19	경기	계원예술대학교	소형
20	경기	안양대학교	소형
21	경기	용인송담대학교	소형
22	경기	협성대학교	소형
23	경기	장안대학교	소형
24	경기	동서울대학교	소형
25	경기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소형
26	경기	성결대학교	대형
27	경기	오산대학교	소형
28	경기	한신대학교	대형
29	경기	한경대학교	소형
30	강원	강원대학교	대형
31	강원	한림대학교	소형
32	강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대형
33	강원	한라대학교	소형
34	강원	가톨릭관동대학교	대형
35	부산	동의대학교	대형
36	부산	고신대학교	대형
37	부산	경성대학교	대형
38	부산	동명대학교	소형
39	부산	부경대학교	소형
40	부산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형
41	부산	부산과학기술대학교(동주대학교,부산여자대학교)	대형

연번	지역	대학명	대소형
42	부산	경남정보대학교	소형
43	부산	동서대학교	소형
44	경남	창원문성대학교	대형
45	울산	울산과학대학교	소형
46	경남	영산대학교(동원과학기술대학교)	대형
47	경남	경상국립대학교	대형
48	경남	경남대학교	소형
49	경북	대구대학교	대형
50	경북	영남대학교	대형
51	경북	경일대학교	소형
52	경북	대구가톨릭대학교	소형
53	경북	대경대학교	소형
54	대구	계명대학교	대형
55	대구	영남이공대학교	대형
56	경북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대형
57	경북	위덕대학교	소형
58	경북	경운대학교	대형
59	경북	구미대학교	대형
60	경북	안동대학교	대형
61	경북	안동과학대학교	소형
62	전남	동신대학교	대형
63	광주	조선대학교	대형
64	전남	전남도립대학교	소형
65	광주	광주대학교	소형
66	광주	호남대학교	대형
67	광주	광주여자대학교	소형
68	전남	순천제일대학교	소형
69	전남	순천대학교	소형
70	전북	우석대학교	소형
71	전북	전주기전대학	소형
72	전북	군산대학교	대형
73	전북	군장대학교	소형
74	제주	제주대학교	대형
75	대전	한남대학교	대형
76	대전	한밭대학교	대형
77	대전	충남대학교	소형
78	충남	한서대학교	소형
79	세종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소형
80	충북	서원대학교	소형
81	충남	호서대학교	대형
82	충남	남서울대학교	소형
83	충남	순천향대학교	소형
84	충북	한국교통대학교	소형

참고2 '21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대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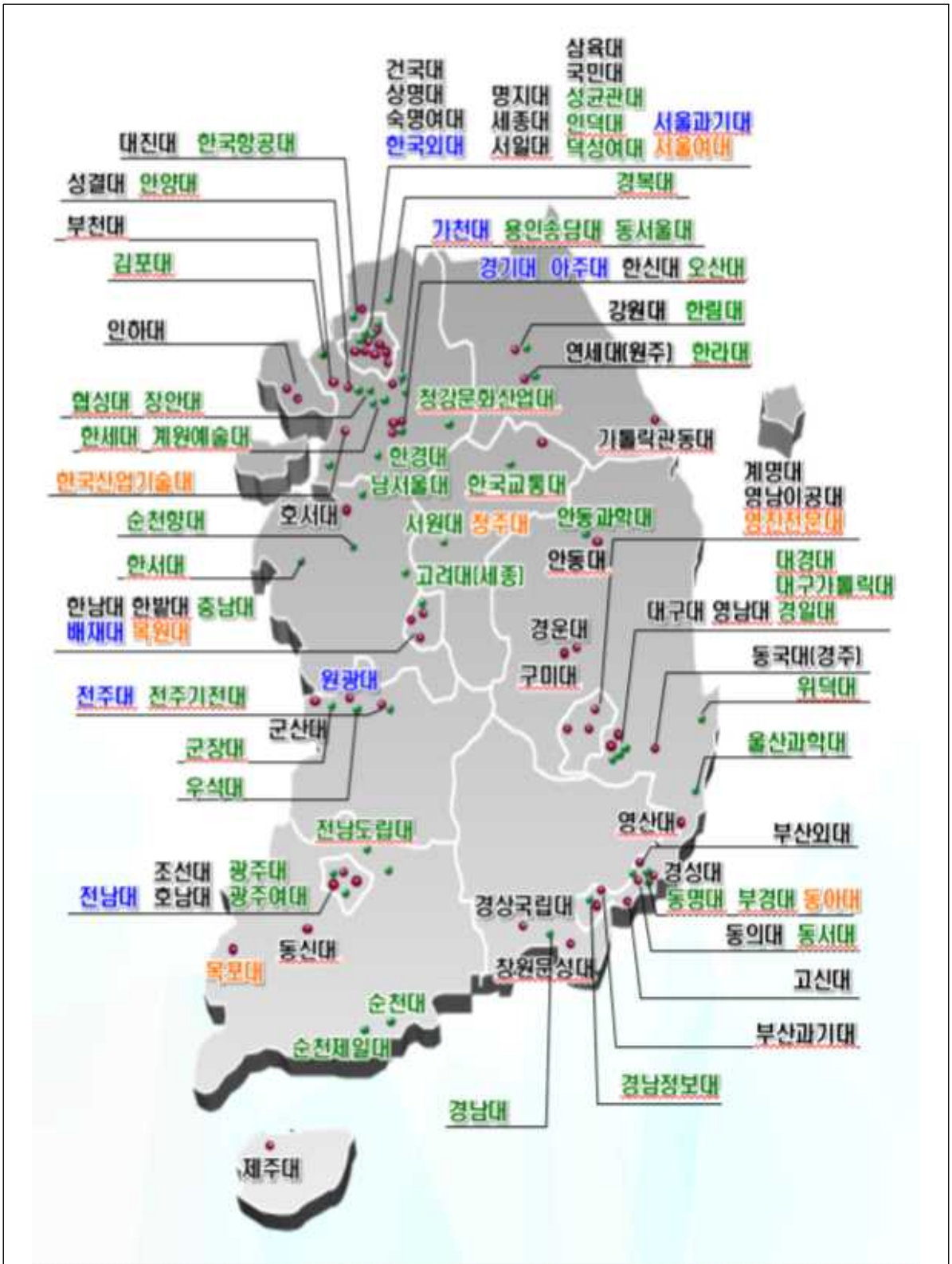

※ 대학일자리센터: 검정색(대형), 녹색(소형)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파란색(대형), 주황색(소형)

Ⅲ. 세부 운영방안

Ⅲ 세부 운영방안

1 지원대학 선정 및 약정체결

1. 사업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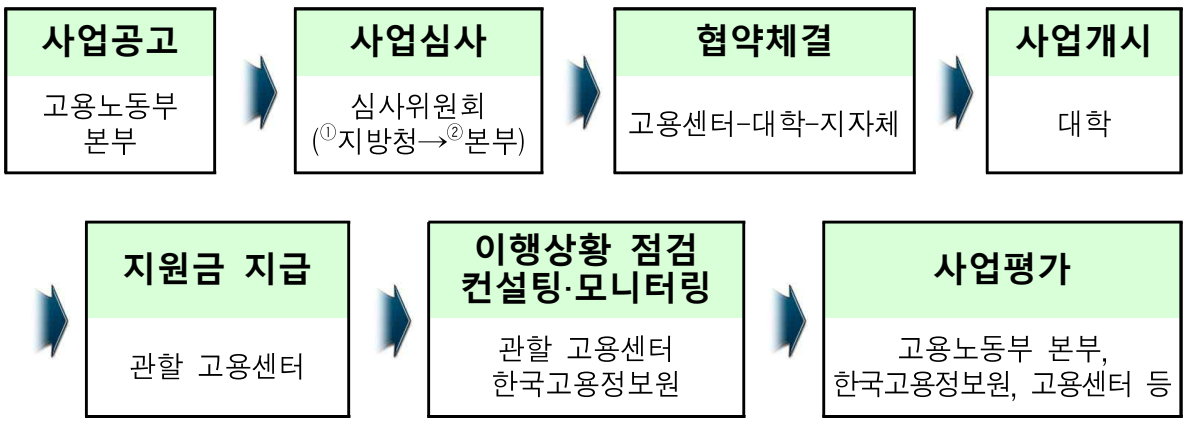

※ 연도별 예산사정 등에 따라 신규대학 선정을 위한 사업공고 및 선정심사 등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

2. 지원대상 및 신청

2-1. 지원대상 대학

○ **(지원요건)**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조직을 갖추고 있는 대학

- 「고등교육법」 제2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분교**는 별도의 대학으로 분류하여 지원 가능

※ 신청년도에 대학(본·분교) 간 통·폐합이 예정된 경우, 통·폐합 후 신청

○ **(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년도 기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3항2호에 따른 의료인·의료기사·약사·한약사 양성을 위한 보건의료 계열 학과 재학생 수가 전체 재학생수의 2/3 이상인 대학

※ **보건의료계열:**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과, 치위생과, 작업치료학과, 안경광학과, 응급 구조학과, 치기공학과, 의무기록(보건행정)학과 등

- 고용노동부 산하 출연대학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
- 교육부 발표('20.9.1),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붙임1 참조>

2-2. 신청방법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이 자체적인 운영역량을 갖춘 경우에는 민간전문기관과의 컨소시엄 없이 **직접 신청 가능(선정심사 우대)**

- 대학 간 컨소시엄(소형사업 제외)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신청 가능

※ 반드시 주관대학을 정해서 신청해야 하며, 주관대학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 대학 간 컨소시엄 구성 시, 사업비 매칭비율 등은 대학이 부담할 예산범위 내에서 대학 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결정

○ **민간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사전에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하여 신청

-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무료·유료 직업소개사업자
- 상기 민간전문기관 상호 간에 컨소시엄 형태로도 참여 가능

※ 단, 민간전문기관의 대표자가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사업 참가 신청일 기준)

2-3. 사업신청 및 구비서류

○ 해당사업 지원·수탁을 희망하는 대학(컨소시엄 포함)은 대학(본교)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접수 시 구비서류>

① **지원신청서 및 관련 사업 수행실적 1부**(서식 1)
* 서식 1~4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뉴스・소식/공지사항) 참조
② **사업계획서**(서식 2)
③ **예산집행계획서**(서식 3)
④ **민간전문기관 사업체 현황**(서식 4, 해당하는 경우)
⑤ 대학설립인가증 사본 1부
⑥ 민간전문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신고필증 사본(무료직업소개사업자)
⑦ 자치단체 사업비 매칭 증빙자료(공문·협약서 등 형식 불문)

○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 명백히 사업 신청 자격이 없는 대학 또는 사업자가 지원한 경우
-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구비서류가 1개 이상 누락된 경우
- 기타 위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3. 선정심사

3-1. 선정심사 기준

○ 사업계획이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의 취지와 부합되는지 여부를 아래 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세부 심사지표('20년 선정지표로, '21년부터는 후속사업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선정, 선정 사항은 해당 공고문 및 별도 지침 참고)

구분	심사지표	주요 내용(예시)
진로 및 취·창업 지원 인프라구축 (40)점	진로 및 취·창업지원 인프라 현황 (20점)	■ **취·창업지원 관련 총장 등 대학의 의지와 비전 수립** • 진로지도, 취·창업 지원에 대한 총장 등 대학 경영잔교직원의 사업의지와 대학의 인재상 및 목표 등이 명확한가? ■ **취업지원 관련 조직 및 인력, 자체 편성예산 등** • 자체 취업지원 조직의 (인원수, 부서위상, 센터장의 지위, 직원의 경력·근속연수, 자격증 등 전문성을 보유한 전담인력수, 사무실 위치 및 학생 접근성, 직원 1인당 학생수, 전체 예산 중 취업지원 관련 조직의 예산금액 등

구분	심사지표	주요 내용(예시)
		■ **진로지도 및 취·창업 관련 교과목 및 담당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계획 등의 적절성** •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 관련 교과목, 비교과프로그램 편성, 교수-교직원-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 역량강화 교육·연수 등 ■ **정부지원사업 수행 능력** • 대학일자리센터 관련 유사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최근 3년간)
	대학일자리 센터 설치·운영계획 (20점)	■ **대학일자리센터 설치·운영계획의 적합성, 실현가능성 등** • 대학내 취·창업지원기능의 공간적·기능적 연계방안이 가능한가? • 대학일자리센터장의 지위(교무위원급 이상), 설치위치, 대학 내 조직기구의 위상 등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한가? • 대학 취업지원인력의 정규직 변경계획 등을 반영하고 있는가? ■ **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 학교 측의 인력·시설 확충 등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학사제도 개편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 산업수요를 반영한 교과목 개편, 인문계 전공자 이공계 복수전공 및 인문계 전공자 융합교육 확대 등 • 학생종합경력관리시스템 운영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진로 및 취·창업 지원 서비스강화 (60)	진로 및 취·창업지원 서비스 강화 (35점)	■ **계획 및 성과달성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 • 체계적인 진로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성과달성이 가능한가? ■ **학년별, 전공별, 유형별 등 맞춤형 진로지도서비스 제공** • 적성, 전공을 고려한 진로목표설정 지원(주요 심리검사), 진로지도 교과목의 필수과목 지정 등을 통하여 저학년 때부터 체계적 진로지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가? ■ **산업현장 수요 및 직무에 기반한 체계적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수립** • 중소기업탐방, 재학생 직무체험, 현장실습 등 산업현장 수요에 기반한 체험형 및 취업연계형 일경험 프로그램의 단계적·체계적 운영계획 수립 ■ **교수, 교직원 등의 진로지도 참여의 적극성** • 진로취업지원 전담교수 배치 등 교수 및 교직원의 적극적 진로취업지원 참여, 대학일자리센터와 학과·전공 간 연계·협력계획이 반영되어 있는지? • 교수 및 교직원 대상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역량강화 교육이 가능한가? ■ **계획 및 성과달성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 • 취업지원서비스 강화계획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성과달성이 가능한가? – 타대생 및 인근지역 청년들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포함은 필수 • 취업지원 관련 교과목 개편, 취업박람회, 취업강좌, 취업캠프, 현장실습 및 직무체험,

구분	심사지표	주요 내용(예시)
		취업동아리 지원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 **정부 지원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 정부지원 인턴십, 재학생 직무체험, 중소기업탐방, 청년취업아카데미,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부의 청년취업지원 서비스 참여계획이 적절하고 실현 가능한가?
	해외취업 지원계획 (10점)	■ **계획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 등** • 해외취업 전문인력 배치, 해외취업 박람회 개최,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계획 등이 가능한가? ■ **해외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 • 저학년 때부터 해외취업관련 상담, 경로 설정 등 진로지도, 주기적인 강좌(특강) 진행, 해외취업 관련 교과목 개편 및 학점 인정 등이 가능한가?
	청년고용 정책 체감도 제고 (15점)	■ **대학 내 정책 전달체계 계획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 •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 등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지역 청년들에 대한 청년고용정책 홍보계획 및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한 대학일자리 센터 접근성 제고계획이 포함되어 있는가?
합계	100점	■ **각 지표별 점수 합산**
가점	10점	■ 민간전문기관과의 컨소시엄 없이 대학일자리센터를 자체 운영하는 경우(2점) ■ 여대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충실하게 갖춘 경우(1점) ■ 외부기관과의 협업(3점) * 고용센터, 자체단체,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창조경제혁신센터, 인근 대학, 기업 등과의 협업·연계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 ■ 지역청년고용서비스제공(2점) * 자대생 외의 진로취창업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지역 청년에게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 ■ **신청 전년도에** 동아일보 청년드림대학 선정 및 Best Practice 수상 대학(2점)

3-2. 선정심사 절차 및 방법

신청서 접수	기초검토	선정심사위원회	선정발표
관할 고용센터	관할 고용센터	<1차> 8개 고용노동청(대표지청) 주관 <2차> 고용노동부 주관심사	고용노동부 본부

①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관할 고용센터)

② **기초검토(관할 고용센터)**

- 신청서를 접수받은 관할 고용센터는 신청서류 구비 여부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한 후, 접수받은 서류 일체를 관할 고용노동청(대표지청) 고용센터에 제출
- 관할 고용센터는 사업계획서·첨부서류 등을 검토 후 '기초검토서'(서식 5)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청(대표지청) 고용센터에 제출

※ 필요시 관할 고용센터는 신청대학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

③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1차 심사)** 8개 고용노동청 및 대표지청에서 **프리젠테이션 발표** 및 서면심사 방식으로 1차 심사 진행 후 **권역별 추천순위 결정**
  - 고용노동청(대표지청)에서는 관할 고용센터의 기초검토서, 심사 시 논의사항, 심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종합 검토의견서'(서식 6) 및 '1차 심사결과표'(서식 7)를 작성하여 본부 보고
- **(2차 심사)** 지방청 종합 검토의견서 및 1차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 검토, 권역 간 조정 등을 거쳐 **우선협상대학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차 심사)** 민간전문가 최소 3인 이상 포함하여 총 7인 내외 구성(위원장 호선)

- 내부위원: 청·대표지청 고용센터소장, 관련 센터 소(과)장 등
- 자치단체: 관내 광역 및 예산매칭 자치단체 담당공무원(4~5급) 등
- 민간위원: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 등 청년고용 전문가, 여성인력개발 전문가 등 최소 3인 이상(신청대학 소속 교수 등 이해관계자 배제)

◈ **(2차 심사)** 고용노동부 담당과장, 교육부·여가부·과기부 등 관계부처 담당과장(또는 담당자), 한국고용정보원 담당 연구위원, 청년고용 관련 민간전문가 3인 이상 등 총 7인 내외로 구성(위원장은 호선)

④ **선정발표(고용노동부 본부)**

- 본부는 심사 종료 후, '우선협상대학' 선정결과를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해당 대학에 통지하고, 홈페이지에 게시

4.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지원약정 체결

4-1.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한국고용정보원(총괄지원기관)은 우선협상대학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컨설팅 의견을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해당 대학에 통보

○ 우선협상대학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컨설팅 의견을 참고하여, **수정 사업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한국고용정보원에 제출**

4-2. 지원약정 체결 및 변경

○ 관할 고용센터는 수정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매칭여부 등을 확인 후, 원칙적으로 매년 2월말 이전에 우선협상대학과 **「지원약정서」**(서식 8) 체결 및 본부에 결과 보고

> ☞ **약정체결 주체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장 및 해당 대학 총장이며, 지방자치단체가 희망할 경우 협약대상에 포함(민간컨소시엄 기관은 제외)**
>
> ☞ **대학 간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대학이 대표하여 약정 체결(단, 약정서 내용상에는 모든 참여대학 기재)**

○ 관할 고용센터는 우선협상대학이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컨설팅 의견을 미반영한 경우, 자치단체의 사업비 매칭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대학이 사업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본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우선협상대학 교체 등 조치

- 본부는 우선협상대학을 교체하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2차 선정심사에서 결정된 후보대학 순위에 따름

○ 지원대학은 약정체결 이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약정내용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필요시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약정 변경 가능(서식 9)

- 관할 고용센터(또는 자치단체)는 변경내용이 사업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약정을 변경하고, 변경내용 등이 당초 승인한 사업내용의 취지를 현저히 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 불승인 또는 지원약정 철회 가능

※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 지원약정 철회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부 협의

○ 관할 고용센터는 대학 자체부담금 미확보, 자치단체의 사업비 미지급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과의 약정을 해지하고, 정산기준에 따라 해지 시점 이전까지의 소요경비를 제외한 지원금을 반환 조치

2 주요 사업내용 및 운영관리

1. 사업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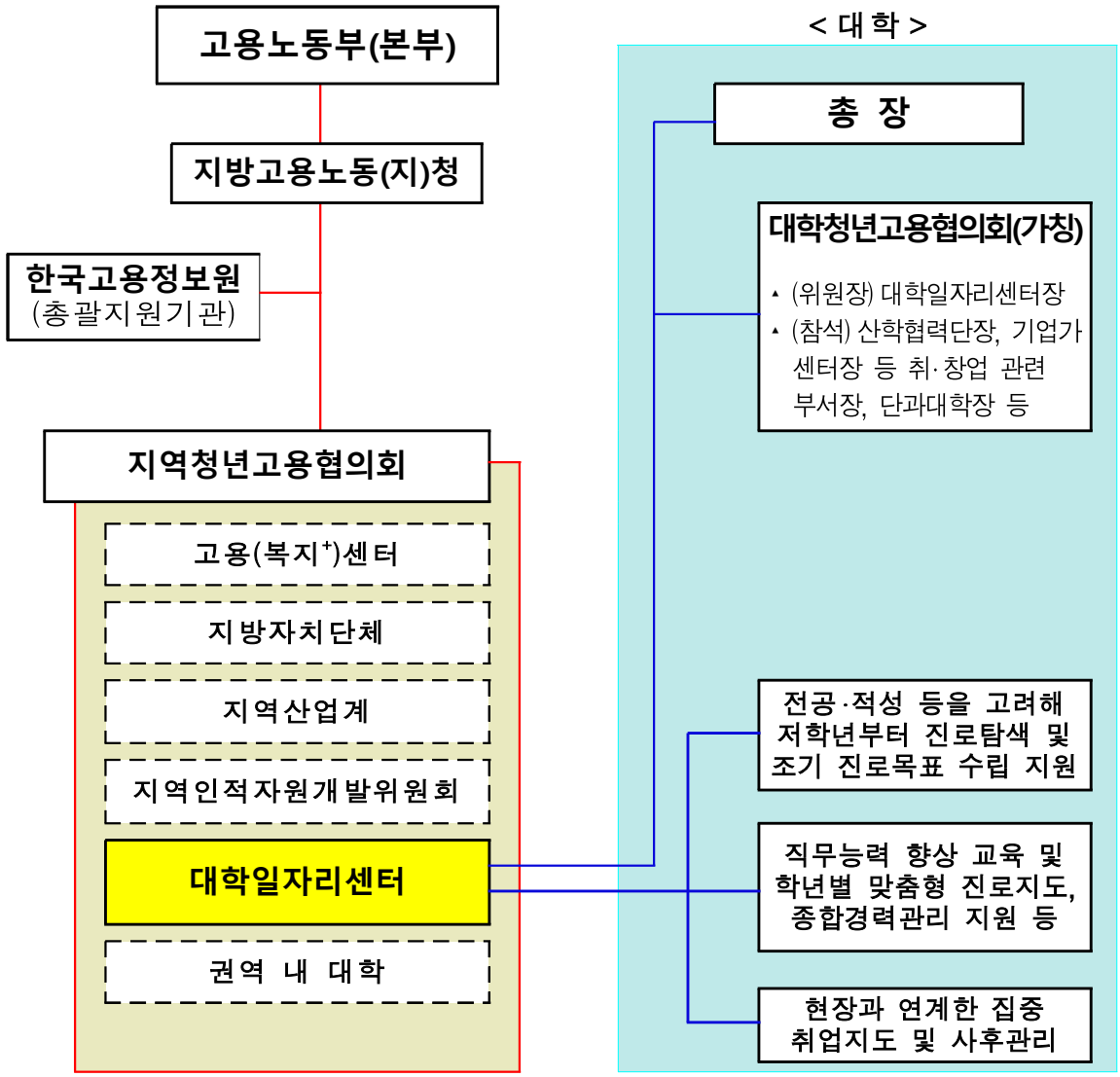

○ **(대학일자리센터장)** 진로지도 및 취·창업 관련 실무경험이 풍부한 처장급 교수 등 학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가 보장되는 **교무위원급 이상으로 선임(필수)**

○ **(대학청년고용협의회(가칭))** 대학 내 진로취업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대학일자리센터장(위원장) 및 취·창업 관련 부서장, 단과대학장 등으로 구성하는 대학 내 자율 협의체로,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 관련 의사결정, 사업조정, 제도개편 등 논의

2. 주요 사업내용

2-1. 대학 내 취·창업 지원 인프라 구축

◈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참여로 인해 대학에서 기존에 추진하던 취·창업 지원 인프라, 예산, 프로그램 등의 지원규모가 축소되지 않아야 함

○ 대학 내 각종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기능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거나 **기능적으로 연계**하여 **대학일자리센터로 일원화**

※ **(대상)** 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대학 자체 경력개발센터, 대학청년고용센터, 취업지원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 가급적 관련 부서의 공간적 통합을 추진하되, 대학 내 장소적인 여건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게 설치

○ 진로 및 취·창업 지원 관련 **학사제도 제정 및 개정**

- 산업수요를 반영한 교과목 개편
- 취·창업지원 강화를 위한 입학·재학·졸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 인문계 전공자 이공계 복수전공 및 융합교육 확대
- 학생종합경력관리시스템 구축·운영(필수이행요건)

2-2. 진로지도 강화

◈ 진로지도 관련 필수교과 운영 의무화 등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진로지도 시스템 구축 및 교수·학과 차원의 진로지도 역량 강화

○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진로지도 서비스** 제공 확대

- 직업심리검사·진단, 상담, 교과·비교과프로그램 등을 통한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 제공 및 적성·전공을 고려한 진로목표 설정 지원

○ **진로지도 관련 교양·전공 필수 교과목 운영(필수이행요건)**

○ 교수, 교직원 및 컨설턴트 대상 자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 역량강화 관련 교육, 워크숍, 정보제공 등

2-3. 취·창업지원서비스 강화

◈ "진로탐색-진로설정-역량개발-취업지원-사후관리" 등으로 연계되는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정부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체감도 제고

○ 직무역량에 기반한 **교육·훈련 및 역량개발 단계**

-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직무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프로그램 운영
- 젠더의식 강화, 여대생 커리어개발 등 여대생 특화프로그램 운영
- 현장실습, 중소기업 탐방 및 각종 체험형·채용연계형 인턴십 등 재학 중 일경험 기회 확대
-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직무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프로그램 운영

○ 산업현장과 연계한 적극적 **취업지원·알선 단계**

- 취업특강, 취업동아리 지원 등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산업계·지역 기업네트워크 등과 연계한 취·창업교육 활성화
- 채용연계형 인턴십 등을 활용한 취업지원, 상담·역량개발로 연결되는 종합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등
- 재학생·졸업생, 타대생, 인근 특성화고교생 등 지역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채용박람회 등 추진
- 해외취업 상담·컨설팅, 해외취업박람회 등 해외취업 지원 강화

○ **사후관리 단계**

- 학과·전공, 업종·직무별 졸업생 취업현황 D/B 구축·분석 및 활용 등

2-4. 청년정책 체감도 제고

◈ 청년의 정책체감도 제고를 위한 청년정책 홍보, 정책사업 참여 연계

○ 대학일자리센터,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인지도·만족도 제고

○ 온라인 청년센터* 연계 등을 통한 청년정책정보 안내 및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공유 등 우수사례 확산

* 청년들의 청년정책 접근성을 강화한 정책・공간・상담 통합정보 제공 사이트(www. youthcenter.go.kr)

○ 대학일자리센터 및 청년고용정책 사업 홍보 및 설명회

2-5. 지역청년고용거버넌스 구축·운영 및 지역청년 고용지원

◈ 고용(복지+)센터, 자치단체, 지역인자위 등과 연계, 지역 단위 공동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층 특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기능 수행

※ 소형사업은 지역청년고용서비스 제공 자율(단,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와의 협업·회의참가 등은 필수)

○ 고용(복지+)센터·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주기적 협의체 운영 및 공동·연계프로그램 운영, 협업·정보교류 등

○ 지역 청년고용거버넌스 기반 공동 취업지원프로그램, 채용박람회 등의 운영을 통한 지역 청년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인근 특성화고, 타대생 등 지역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및 인근 대학 취업지원 담당자들과의 정보교류 등

○ 고졸미취업 청년, 타대생, 일반 취업준비청년 등 지역청년층 대상 취업상담·특강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AI 면접 서비스, 지역 청년 직무특강·취업클리닉 등

참고 대학일자리센터 주요 사업내용(요약)

구 분	사 업 내 용
대학 내 진로지원 및 취·창업 지원 인프라 구축	▲ **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기능 연계에 필요한 사항** - 취·창업지원 관련 대학 내 행정부서 일원화 및 사업단 등과의 연계체제 구축(직제 등 위상강화를 통해 대학일자리센터가 총괄·조정 기능 수행, 교무위원급 센터장 의무 배치) ▲ **학사제도 제정 및 개정 등 취업지원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산업수요를 반영한 교과목 개편, 일학습병행제 확대 - 취업전담교수제 또는 (가칭)역량강화 포인트 적립제 등 역량강화 인프라 확산 -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역량 강화를 위한 입학-재학-졸업단계별 맞춤형 지원 - 인문계 전공자의 이공계 복수전공 확대 및 융합교육 확대 - 학생종합경력관리시스템 운영(필수) ▲ **기타 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자율 추진** ☞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참여로 대학이 기 추진 중인 인프라, 지원예산 등이 축소되지 않아야 함**
진로 및 취·창업 지원 서비스 강화	▲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진로지도 서비스 제공 확대 등에 필요한 사항** - 적성·전공 등을 고려한 진로탐색 및 진로설정 지원(직업심리검사 및 역량진단 등 활용) - 진로지도 교과목을 필수 과정으로 지정 의무화(필수) - 저학년을 포함한 재학생 진로지도 프로그램 대폭 보강 → 계열·분야별 프로그램, 「진로 상담가이드」 개발·보급, 「취업지원가이드(전문대/일반대)」 보완 - 교수 및 교직원 대상 진로지도 역량강화 교육 등 자체 프로그램 운영 ▲ **"진로탐색-진로설정-역량개발-취업지원" 등으로 연계되는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부 청년지원사업, 훈련 등 청년고용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한 홍보 활성화** ① 직무역량에 기반한 **교육·훈련 및 역량개발 단계** - 인문계열 이공계 복수전공 및 융합교육 확대, 여대생 특화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중소기업탐방, 현장실습(재학생직무체험 등), 인턴십, 일학습병행 등 일경험 기회 확대 - 창업교육 연계·효율화 및 취업캠프 등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② **정책체감도 제고를 위한 정부청년고용정책 홍보** - 학생, 교수, 인근 청년들에 대한 찾아가는 홍보·설명회 실시 - 청년고용정책, 학교 내 취·창업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만족도 제고 노력 ③ 산업현장과 연계한 적극적 **취업지원·알선 단계** - 워크넷을 활용한 재학생·졸업생, 타대생, 특성화고 등에 대한 취·창업지원(설명회 등) - 상담·훈련 등 종합적 서비스가 필요한 청년은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기관과 연계 - 해외취업 지원(해외취업상담 및 컨설팅, 해외취업박람회 개최 등) ④ **사후관리 단계** - 학과·전공별, 업종·직무별 등 졸업생 취업 D/B 구축 및 취업경로 분석·활용 ▲ **기타 대학에서 진로 및 취·창업지원 서비스 강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자율 추진**
지역 청년고용 거버넌스 구축·운영 **(소형사업은 자율)**	▲ **지역 내 고용(복지+)센터, 자치단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과의 연계·협업을 통해 청년층 대상 고용서비스 핵심 전달체계로서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고용(복지+)센터·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주기적 협의체 운영 및 공동·연계 프로그램 운영, 인력 수요·공급 관련 협업·정보교류 등 - 인근 특성화고, 타대생 등 지역청년에 대한 서비스 및 청년고용정책 홍보, 인근 대학 취·창업지원 담당자들과의 정보교류 등 ▲ **기타 대학에서 지역청년고용거버넌스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자율 추진**

3. 지원내용 및 사업관리

3-1. 사업기간 및 주요 지원내용

○ 사업기간 및 회계연도

- **(사업기간)** 선정된 연도를 포함하여 **최대 5년**(시범사업 기간 제외)**간 지원**하되, 매년 실시하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여부 등 결정
- **(회계연도) 매년 3월부터 익년 2월까지** 연도별 사업 운영

※ 정부지원금은 해당연도 12월말 이전에 대학에 전액 지급, 익년 3월에 사업 정산

○ 주요 지원내용

- 사업비는 **대학당 연간 6억원(소형 2억)**으로 하고, 선정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재학생수 5,000명 미만' 대학에 대해서는 일부 감액

※ 감액 적용을 받는 재학생수 5,000명 미만 대학은 총 사업비를 5억으로 적용

- 사업비는 고용노동부 50%, 대학·자치단체가 공동으로 50% 부담

※ 대학과 자치단체간 매칭비율은 자율조정 가능하나 반드시 자치단체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

※ '17년 이후 신규 선정대학은 4년차부터 정부지원비율 연차별 감액(시범사업기간 제외), 단, 전체 사업비(대형 6억, 소형 2억)는 반드시 유지

⇨ **(연차별 정부지원비율) 전체 사업비 대비 1~3년차 50%, 4년차 45%, 5년차 40%, 6년차(인센티브 대학) 40%**

⇨ **(우수대학 인센티브) 3년 연속 평가 우수대학은 감액비율 대비 50% 감액: 4년차 47.5%(2.5% 감액), 5년차 45%(5% 감액), 6년차(인센티브 대학) 45%**

☞ 예시) 대형(6억): 4년차 2.85억, 5년 및 6년차 2.7억

3-2. 전문컨설턴트 배치·운영

○ 대학은 자체고용 또는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센터 내에 진로·취업상담,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는 전문컨설턴트를 배치

- 컨설턴트를 신규 채용하거나, 변경(부서 이동, 퇴사 등) 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서면으로 현황 보고

※ 관할 고용센터는 컨설턴트 자격요건(28p ①~⑥)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달하는 경우 및 컨설턴트 채용·변경 등 보고 누락의 경우에는 시정·경고 등 조치

※ 컨설턴트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자를 채용한 경우 시정 조치, 시정 불응 할 경우 인건비 불인정

- 컨설턴트 수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대학상황에 맞게 자율 결정

※ 전체 사업비(6억원)의 35~50% 범위에서 인건비 활용이 가능(대형사업 기준)
(예시)1인당 평균연봉이 약 3,500만원인 경우 6~9명(소형사업 약 3명) 채용 가능

- 해외취업 관련 상담·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지정

○ 대학은 센터 내에 개인별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도록 독립된 형태의 상담실을 마련하고, 컨설턴트의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 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워크숍 등을 운영해야 함(성과평가 반영)

- 다만, 자체 교육과정 운영 등이 곤란할 경우, 한국고용정보원 주관 교육과정 참여, 권역별 공동 프로그램 등 방식으로 운영 가능

○ 컨설턴트는 청년 개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개인별 상담내용 등을 '경력개발시스템(전산)' 등을 통해 입력·관리

※ 워크넷 전산망 등으로 상담내용을 기록·관리하는 것도 가능

○ 대학이 컨설턴트 등 전문인력을 **교(직)원으로 신규채용**하거나 **장기적으로 정규직화** 할 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선정심사·성과평가 우대**

※ 정규직화는 대학 정규직 채용,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방식을 말함

○ 전문컨설턴트 자격요건(①~⑥ 중 어느 하나의 요건충족 시 가능)

---

①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② 「청소년상담사」 1~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③ 「직업안정법」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 업무 및 직업정보제공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한 경우에 한함)

④ 기업체에서 인사·노무 등 HRD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한 경우에 한함)

⑤ 경영자 단체, 노동조합 등 근로자 단체, 고용 관련 공공·민간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 업무 경험이 3년 이상인 자(인사·채용 및 진로지도·취업지원 등 업무)

⑥ 그 밖에 전공·경력 등을 고려할 때, 직업·진로 및 취·창업지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관할 고용센터장이 인정한 자

3-3. 대학 간 또는 민간전문기관 컨소시엄 운영 관련

○ **"대학 간 컨소시엄"**을 통한 사업 운영(소형사업은 제외)

- 대학 간 컨소시엄 구성 시, 주관대학을 통해 정부지원금이 지급되며, 사업선정·정기점검·성과평가 또한 주관대학을 대상으로 실시
- 주관대학 및 참여대학 간 **사업비 분담이 가능**하며, 분담비율 등은 대학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
- 대학일자리센터 사업비를 통해 배치된 컨설턴트는 **주관대학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정 요일을 정해 참여대학에 출장 등 방식**으로 상담 및 공동프로그램 운영 가능

※ 단, 대학 간 거리·특성 등을 고려, 2명 이내 범위에서 참여대학에 상시배치 가능

○ **"민간전문기관과의 컨소시엄"**을 통한 사업 운영

- 대학은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등 민간고용서비스 기관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운영이 가능하나, 사업 **운영주체는 반드시 대학**이어야 하므로 **민간기관에 일괄 재위탁하는 방식은 불가**

※ 민간전문기관의 전문성과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 활용, 단기간에 인력 확보가 곤란한 대학의 현실 등을 고려하여 민간기관과의 컨소시엄 허용

※ 컨소시엄 기관을 통해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자체운영으로 변경하는 등 사업주체인 대학의 운영역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경우 성과평가 시 우대

-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지원약정 당사자는 '대학'이며, 대학-기관 간 사업계약 체결 등 컨소시엄 방식은 대학·기관 간 협의로 결정

> ▲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프로그램 전체를 민간전문기관에 일괄 위탁하는 방식은 불가
> ▲ 대학일자리센터 사업계획에 포함된 프로그램 중 대학 자체 운영이 어려운 특정 프로그램을 기간(단기간) 또는 운영 횟수를 정하여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업무단위 및 기간을 한정하여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

- 컨설턴트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 컨소시엄 기관에 지급될 사업비는 해당 기관의 신청에 따라 대학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기관 간 협의를 통해 지급시기 등 결정

※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를 컨소시엄 기관에 일괄 지급하고, 컨소시엄 기관이 주관하여 이를 집행하는 방식은 불가

- 대학은 민간기관과의 계약·약정 등에 따라 사업기간 중 컨소시엄 기관 변경이 가능하며, 다만, 변경 시에는 변경사유, 업체변경 또는 자체운영계획 등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와 사전협의 진행

※ 단, 업체 변경 시 기존에 배치된 컨설턴트에 대한 고용승계 노력 등 조치 강구

- 대학은 컨소시엄 민간기관의 자격요건(16p 하단) 상 하자 발생여부를 주기적(반기1회 이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컨소시엄 민간기관은 자격요건 변동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동사유 등을 대학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대학은 관할 고용센터의 지도점검 시 컨소시엄 민간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4. 사업비 활용

4-1. 사업비 내역

○ 사업비는 **운영비·프로그램비**로 구분되며, 총 사업비 내에서 운영비는 40~55%, 프로그램비는 45~60% 범위 내에서 활용 가능

- 운영비는 '인건비'와 '운영경비'를 포함하며, **프로그램비 중 1억**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 등 수요파악**을 통해 선정된 **취·창업 지원 관련 프로그램의 사업화**에 활용(공모사업비, 소형사업 자율)

※ 공모방식은 설문 등 수요조사, 프로그램 공모, 아이디어 제안 등 매년 학생 등 수요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자율적 운영

○ 사업비는 가급적 항목별 비율에 맞게 사업계획에 반영·활용하되, 불용이 명확하게 예상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와의 협의를 거쳐 **항목 간 전용** 가능**(총 사업비의 10% 범위 내)**

※ 단, 인건비-프로그램비(공모사업비 포함) 간 전용만 가능하며, 운영경비는 제외

○ 사업비 세부내역

항 목	사용비율	세부내역	세부 사용비율 및 금액
운영비	총 사업비의 40~55%	인건비	▲ **대형: 총 사업비 6억 중 35~50%** (210~300백만원) * 감액대학: 175~250백만원 ▲ **소형: 총 사업비 2억 중 35~50%** (70~100백만원)
		운영경비	▲ **대형: 총 사업비 6억 중 5% 이내** (30백만원) * 감액대학: 25백만원 ▲ **소형: 총 사업비 2억 중 5% 이내** (10백만원)
프로그램비	총 사업비의 45~60%	프로그램비	▲ **대형: 총 사업비 6억 중 45~60%** (270~360백만원) * 감액대학: 225~300백만원 ▲ **소형: 총 사업비 2억 중 45~60%** (90~120백만원)
		(공모사업비)	▲ **프로그램비 총액 중 1억원(소형은 자율)** * 감액대학: 83,300천원

4-2. 사업비 활용기준

◈ 대학이 자체 사업계획 및 사업취지에 맞게 자율적으로 활용하되, 센터 운영과 대학의 진로 및 취·창업지원 역량강화 등을 위한 소요경비로만 활용

4-2-1. 인건비(총 사업비의 35~50%)

○ 지원대학은 대학일자리센터에 배치된 **'컨설턴트'의 인건비** 지급을 위해 **총 사업비의 35~50% 범위**에서 인건비 책정

※ 대학일자리센터에 배치된 자격요건을 갖춘 '컨설턴트' 인건비에 한하며, 일반 교(직)원 또는 행정보조인력의 인건비로는 활용할 수 없음

- 컨설턴트 인건비는 **법정수당 등을 포함**하여 책정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전공·경력·역량**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차등지급 가능**
- 지원대학은 개별 컨설턴트와의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인건비 책정

○ 지원대학은 사업주 사회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건비로 책정 가능하나, 컨설턴트 인건비 항목과는 별도 구분하여 예산 책정

- 퇴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 또는 매월 적립도 가능

※ 퇴직금 적립은 대학일자리센터 근무기간에 대하여 인정하며, 추후 법정퇴직급여 지급기준을 충족하기 전 퇴사하는 등 적립금 미집행 사유가 발생 시 환수 (고용센터는 매년 점검 및 정산 시 퇴직적립금 정상 적립·집행 여부 등 확인)

(예시1) 대학 내 타 부서에서 3개월 근무 후 이어서 대학일자리센터에서 6개월 근무한 A 컨설턴트가 퇴사한 경우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대학일자리센터 근무기간 중 적립한 퇴직급여 충당금 등 적립금 환수

(예시2) 컨소시엄 기관 소속 B 컨설턴트가 타 업무 9개월 수행 후 이어서 대학일자리센터에서 6개월 근무 후 퇴사한 경우 → 컨소시엄 기관 소속 계속 근로기간이 15개월로 법정퇴직급여 지급기준을 충족하므로 대학일자리센터 근무기간(6개월) 중 적립한 퇴직급여충당금 인정 가능

※ 단, 사업주 사회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담금은 가급적 대학부담 매칭예산 활용

○ **기업에서 인사·교육 등 HRD 업무**를 담당한 경력자를 **파트타임,** 또는 **비상근 컨설턴트** 등으로 활용 가능

※ 단, 전체 인건비 범위 내에서 활용해야 하며, 대학 또는 컨소시엄 기관과 계약 체결

※ 특강, 멘토링 등을 위한 강사·멘토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비 활용

4-2-2. 운영경비(총 사업비의 5% 이내)

○ 지원대학은 **대학일자리센터 운영과 관련된 소요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의 5% 이내 범위**에서 운영경비 책정 가능

- 업무추진비(간담회·업무협의·행사 등 관련 식대·다과비용 등)는 **운영경비 총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운영경비의 10% 이내**에서 **민간컨소시엄 기관 관리비**로 사용 가능

※ 단, 소속 컨설턴트 채용·관리, 센터 운영과 관련한 대학 등과의 간담회·회의·출장 등에 따른 실비에 한하며, 운영경비 활용·정산기준에 준해서 집행(컨설턴트 대상 역량강화 교육·워크숍 등은 프로그램비로 집행)

※ 운영경비 사용가능 내역(예시)

- 센터업무 관련 간담회·업무협의·행사·취업처 발굴 등에 소요되는 식대·다과비용 등(업무추진비)
- 컨소시엄기관의 소속 컨설턴트 채용·관리, 센터 운영 관련 간담회·회의·출장비 등 관리비용(민간컨소시엄 기관 관리비)
- 각종 소모성 사무용품 구입, 사무용 비품 등의 수선·수리비용
-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개별 구입 단가 50만원 미만 소모성 구입물품 (손 소독제, 체온계, 마스크, 아크릴판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위생용품, 웹카메라· 마이크 등)

<불인정 사례>
· 범용성 장비인 책상, 노트북, 태블릿 구입 등 자산취득 경비
· 강의실 등 시설·유지·보수·임대, 증·개축 등 인프라 구축 비용

- 센터 업무 관련 간담회·행사 시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 우편·택배비용 등
- 대학 소속 교직원·컨설턴트(컨소시엄기관 컨설턴트 포함)의 출장비(동 사업 및 센터 업무와 관련된 출장의 경우에 한하며, 대가를 받는 외부 강의 등에 대한 출장비는 지급 불가)
- 센터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회의 등에 참석한 외부위원 수당 지급(대학 내부 교직원에 대해서는 회의수당 지급 불가)
- 기타 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소속 직원의 사기진작 등과 관련한 비용 등(대학별 연간 총100만원 이내)

<불인정 사례>
· 민간컨소시엄 기관에서 소속 직원 전체에 지급하는 명절선물을 대학일자리센터에 배치된 컨설턴트에 대해서만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예산으로 집행 → 불인정
· 단, 위 사례에서 대학일자리센터에 배치된 컨설턴트에게만 대학차원에서 별도로 명절선물을 지급하는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급하였다면 인정

○ 운영경비는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의 취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 자율적으로 활용(단, 시설 유지·보수·임대, 증·개축, 자산취득 경비 등으로는 사용 불가)

4-2-3. 프로그램비 (총 사업비의 45~60%)

○ 지원대학은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위해 **총 사업비의 45~60% 범위**에서 프로그램비 책정 가능

- 대형사업 프로그램비 중 1억(감액대학 83,300천원, 소형대학 자율)은 **'공모사업비'**로 편성

※ 매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프로그램 공모, 설문조사, 제안 등 대학 자율적 의견수렴 절차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선정된 프로그램의 사업화에 활용

○ 지원대학은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취·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업목적 및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규 프로그램**(기존 프로그램 보완·확대 등 포함) **개발·운영 가능**

※ 당초 사업계획에 없던 신규 프로그램이라도 대학이 사업취지에 맞게 자율적으로 개발·운영하되, 사업취지 부합 및 사업비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고용센터와 사전 협의 진행(**개별 사업별 사전인증은 지양**)

분 야	프로그램비 사용가능 내역 (예시)
취·창업 지원역량 강화	▲ 대학의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역량 진단, 컨설팅 실시 비용 ▲ 컨설턴트 및 대학 취·창업지원 업무담당 교직원 대상 역량강화 교육 운영과 관련한 비용(자체 교육 또는 위탁교육 포함) * 자체교육 강사료, 교육장 임차료, 식대·다과비, 위탁교육비 등 ▲ 기타 대학의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비
취·창업 지원시스템 구축	▲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 관련 학사제도 개편 관련 비용 * 학년별 맞춤형 진로·취업지원 모델 개발·운영, 인문계 전공자의 이공계 복수전공 허용범위 확대, 산학연계·협력 확대, 진로·취업지원 전담교수제 운영, 경력개발 마일리지 등 역량강화 포인트제 운영 등 ▲ 대학 내 On-line '학생 종합경력개발시스템' 개발·운영 비용 ▲ 경력개발시스템(전산)을 통한 상담 및 프로그램 신청 및 관리 원스톱화, 비대면 콘텐츠 및 Open-API 방식을 활용(워크넷 등)한 취업 및 청년 정책정보의 온라인 제공 등을 위한 시스템 개선 비용 ▲ 기타 대학의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분 야	프로그램비 사용가능 내역(예시)
교과·비교과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 프로그램 개발 등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운영 관련 비용 * 교과목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재 등 개발·제작, 외부강사료(대학 자체 강사료 지급기준 등에 따른 적정 수준의 강사료) 등 강의지원비 <불인정 사례> · 학생에게 단순히 수강권을 배부하거나, 수강료 등을 지원하는 비용 · 교과목(콘텐츠) 개발비가 아닌 기존 운영하던 교과목의 교강사비 * 프로그램 참여 우수자에 대한 포상(기프티콘 등) 지급 비용 <불인정 사례> · 전체 참여 학생에 대한 상품권(커피 쿠폰, 식사권 등) 일괄 지급 ▲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 관련 플랫폼·솔루션 등 구축 및 이용비** * 화상교육, AI면접, 온라인 멘토링 등 비대면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앱·교재·프로그램 등 개발·제작·구입비 및 이용료 - 취업캠프, 기업 및 직무설명회, 채용박람회, 각종 경진대회 등 * 학생 대상 경진대회 입상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포상금 지급 가능 - 재학 중 일경험 기회 확대를 위한 체험형·취업연계형 실습프로그램 - 인문계열 및 여대생 취·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 관련 전문자료 구입·인쇄비 ▲ 거점기능 및 지역 청년고용거버넌스 간 연계·협업 프로그램 운영비 ▲ 기타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비용 * 단, 공무원시험 및 공직관련 자격취득 대비반, 토익 등 어학강좌, 국내·외 단순 봉사활동, 학습법 강좌, 기타 직무역량개발과의 관련성이 낮은 일반 교양강좌 등 사업취지에 부적합한 프로그램은 사업비 활용 불가 (직무역량강화 및 취업준비 관련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 등 취업역량 향상을 위한 과정은 예산활용 가능)

분 야	프로그램비 사용가능 내역(예시)
홍보비 등	▲ 정부 청년고용정책 홍보(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탐방, 직업훈련, 일학습병행제·IPP,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청년지원정책) ▲ 대학일자리센터 홍보(센터 소개 및 프로그램 정보가 포함된 포스터·리플렛·책자 등 제작, 홈페이지 개편 등 On/Off line 홍보물 제작 등)
공통사항	▲ 개별 프로그램의 민간전문기관(컨소시엄기관 포함, 대학 자율결정) 위탁비용 집행 가능(단, 프로그램 등 사업은 가급적 대학 직접운영 권장) ▲ 프로그램 참여 학생에 대한 수당 지급 불가(단, 우수자 포상 등은 가능) ▲ 대학 교직원에 대한 강사료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 단, 센터직원 외 교직원을 정규 근무시간 외 또는 방학기간 중 프로그램 강사 등으로 활용할 경우, 대학 자체기준에 따른 적정수준의 강사료 지급 가능 ▲ 대학일자리센터 컨설턴트는 프로그램 운영이 고유 업무 중 하나이므로, 근무시간 외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강사 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인건비(연장·휴일근무 수당 등)로 지급하는 것이 적합

○ **(경력개발시스템-워크넷 연계)** 워크넷의 각종 직업심리검사, 진로 및 취업지원 관련 컨텐츠를 대학 자체 시스템에서 연계 활용하는 등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종합경력개발시스템'과 '워크넷'을 Open-API 방식 등을 활용하여 연계**하는 등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강화를 위한 경력개발시스템 고도화의경우 사업비 활용 가능

※ 자율적으로 워크넷과의 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성과평가 등 우대

○ **(지역 연계사업: 대형은 의무, 소형은 자율)** 고용(복지+)센터, 자치단체 및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지역단위 **청년고용거버넌스 연계·협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계프로그램**에 사업비 활용 가능

- 대학일자리센터 사업비 중 **"프로그램비"의 10% 내**에서 지역단위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 협업사업**에 사용 가능

※ 프로그램비(270~360백만원)의 10% → **27~36백만원**(감액지원 대학은 감액률 83.3% 적용 금액)

- 지역별 유관기관 및 지원대학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내 지원대학들이 일정금액을 분담하여 이를 '공동기금' 등 형태로 운영하는 방식도 가능

※ 지역 내 '대학일자리센터 협의회' 등 지원대학 간 자율적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경비(회비, 프로그램 참가비 등)도 연계사업 예산에서 활용가능

단, 대학일자리센터 협의회 이외 협의회 등과 관련한 교육, 세미나 등 행사 참가비, 출장비는 사용가능하나, 회비는 사용불가

※ 연계사업 예산이 별도 편성되지 않는 '소형사업' 대학의 경우 운영비(대학일자리센터협의회 회비) 및 프로그램비(협의회 프로그램 참가비)에서 집행가능

- 지역단위 공동·연계프로그램 사례

분 야	공동·연계프로그램 사례
구인구직 매칭 측면	▲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의 구인수요와 고용센터·대학 등의 인력풀 연계를 위한 기업홍보 행사, 기업-청년 만남의 날 행사 등 * 예) 강소기업분석 경진대회, 기업설명회, 공동 채용박람회, 채용대행서비스 등
청년 고용정책 홍보	▲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다양한 청년고용정책 홍보, 청년들의 취업 고충을 현장에서 청취하는 소통의 장 마련 등 * 예) 청년고용정책 홍보 페스티벌, 정책홍보서포터즈 등
산학연계 훈련 측면	▲ 지역별 중소·중견기업 및 특화산업 수요에 맞는 훈련과정을 대학의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개설·운영, 지역 내 강소·중견기업과 연계한 직무 체험·현장실습 및 기업탐방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 * 예) 지역연계를 통한 공동 지역기업의 이해와 취업준비 교과목 운영, 기업탐방사업 등
스타트업 토털케어 측면	▲ 지역산업계 등과 연계하여 스타트업 기업의 구인수요와 고용센터·대학의 인력풀 연계, 채용대행, 대학 창업동아리 멘토링 연계 및 창업정보 공유 등

○ **(여학생 특화사업 : 대형은 의무, 소형은 자율)** 지원대학은 대학별 특성에 맞는 **"여학생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함

- 대학일자리센터 프로그램비 중 **"공모사업비"**(1억원, 감액대학은 83,300천원)**의 30% 이상**을 **여학생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활용

※ ‘여자대학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모사업비 활용기준에 따라 학생 대상 공모, 제안, 설문 등 의견수렴을 거쳐 프로그램 운영(남학생도 참여 가능)

※ 실제 개설된 프로그램 명칭에 ‘여대생’이라는 단어를 명기하지 않더라도 기획 단계에서 특성이 반영되어 있고 여성 이수자가 70% 이상인 경우 실적 인정

- 여학생 특화프로그램 사례(예시)

※「여대생 진로개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서」('16.12월, 여성가족부) 참조

영역	프로그램명	주 요 내 용
자기 이해 증진	진로교과목을 통한 여학생의 자기이해	▲ 진로개발 준비도 검사와 해석 ▲ 여학생의 심리적 특징 진단 ▲ 여학생의 대인관계역량 증진
	여학생의 진로장벽 깨뜨리기	▲ 진로장벽 조사지를 통한 검사 ▲ 검사결과를 토한 개인 및 집단상담
	젠더의식훈련(1): 양성평등의 개념 이해	▲ 양성평등의 의미 ▲ 남성·여성의 사회화 ▲ 남성과 여성의 역할 변화
	젠더의식훈련(2): 성평등한 의사소통과 리더십	▲ 남성과 여성의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 ▲ 젠더와 리더십
직업 탐색	진로교과목을 통한 여학생의 직업탐색	▲ 여성 경제활동의 실태와 의미 ▲ 대졸 여성의 취업실태 ▲ 초보 여학생에게 적합한 직업정보 탐색방법 ▲ 여학생의 전공과 직업 ▲ 여학생의 직업정보 활용능력 수준 향상 ▲ 여학생이 궁금해하는 직업현장 이야기 ▲ 여성 유망직장 탐색
	기업의 여성인력 활용에 관한 인사담당자 특강	▲ 기업(기관)의 여성인력활용 실태에 관한 정보·통계 ▲ 여성인력이 많이 활용되는 조직 혹은 여성인력이 기여하는 분야 소개 ▲ 모성보호 제도, 양육지원 제도 소개 및 운영실태 ▲ 여성인력 육성을 위한 제도 소개 ▲ 여성임원 및 관리자 비율, 여성관리자 양성을 위한 노력 ▲ 여성인력 활용 우수기업 리스트 제시
	여성인력활용 우수기업 직무체험 프로그램	▲ 멘토링, 기업탐방 ▲ 인턴십

영역	프로그램명	주 요 내 용
취업 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	진로교과목을 통한 취업목표 설정 및 계획수립	▲ 저학년 - 여학생의 취업목표 설정 - 취업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 - 청년여성의 전 생애 진로개발 준비 ▲ 고학년 - 직업선택 의사결정 요소(남성과 여성의 차이) - 여학생의 희망직장 유형과 나의 선택 - 여학생의 채용정보 탐색 및 정보활용 능력 강화 - 취업목료 구체화 및 취업준비계획 수립 - 여성의 경력단절과 평생경력개발
	능력중심채용 대비 여학생 취업준비 프로그램	▲ 여학생 비율이 높은 전공학과 대상 국가직무능력 표준(NCS) 특강 ▲ 여학생 직무능력 테스트 프로그램 - 여학생들의 관심이 큰 직무를 중심으로 직무수행 능력을 시범적으로 테스트하여, 수행하게 될 직무를 미리 체험하고 능력 평가
직무 능력 훈련	지역전략산업 분야 직무능력훈련 프로그램	▲ 금융기관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MICE 전문가 과정, 해양 레저·관광 전문 마케터 양성과정 등
	지역 서비스산업 일자리를 위한 직무 능력훈련 프로그램	▲ 공정여행기획자 양성과정, Eco Tour 생태문화해설사 양성과정, 지역 보건-복지 분야 특화 서비스 관리 전문가 양성과정 등
	자격증 취득 목적의 직무능력훈련 프로그램	▲ 여성이 진출가능한 분야의 직무자격취득 교육과정
창업 창직 훈련	여학생 특화 창업·창직교육	▲ 여성기업의 현황과 미래 전망 ▲ 여성기업 및 여성 창업 지원정책 소개
	여성 창업 CEO, 창직사례 특강	▲ 여성 벤처기업 창업사례 소개 등
	청년여성 맞춤형 스타트업 커뮤니티	▲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조찬모임 ‘테헤란로 커피클럽’, 여성기업가네트워크 ‘내일’ 등 자발적 모임 소개 등

3 지원금 관리 및 정산

1. 정부지원금 지급·관리

1-1. 지원금 지급조건

○ 지원대학은 대학 내에 일자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공간·시설 및 업무에 필요한 물품**(컴퓨터·프린터·복사기·팩스 등 사무용기기·집기) 등을 지원해야 함

※ 센터가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각종 공과금(전기료·전화요금 등)은 대학이 부담

○ 지원대학 및 컨소시엄 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학생·졸업생, 타대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어떠한 명목의 금품도 받을 수 없음

1-2.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정부지원금은 **반기별로 연 2회(4월, 7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 회계연도가 **매년 3월부터 익년 2월까지**인 점을 고려하여 지급시기 결정, 정부예산 집행지침(조기집행 등)에 따라 지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대학은 **매년 3월말, 6월말까지** 해당 반기별 소요예산이 포함된 **"지원금 신청서"**(서식 10) 및 **"보조사업자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서식12)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관할 고용센터는 반기별 예산 지출내역 및 운영계획 등을 검토 후,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국고보조금 **"교부통지 및 교부조건서"**(서식 11)를 교부

※ 직전 반기 집행 잔액이 있더라도 다음 분기의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집행 가능 (단, 회계연도 내 미집행 예산은 차기년도 이월 불가 → 정산을 통해 환수)

○ 자치단체 매칭예산 신청방식은 자치단체별 별도의 서식·절차 등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지원금 신청방식을 준용하거나 지원대학-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

1-3. 지원금 관리

○ 지원대학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함

○ 지원대학은 정부지원금과 대학 자체 매칭예산은 **통합하여 하나의 계좌를 개설·관리**하여야 하고, **자치단체 매칭예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관리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구축·운영에 따른 기획재정부 지침 (콜센터 ☎ 1670-9595)

- 정부지원금과 대학 자체 매칭예산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집행내역·명세서 등은 재원(국고·자치단체·대학)별로 구분·관리**

○ 고용센터 및 지원대학은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정부지원금 교부·집행·정산** 등 업무 진행

※ 지원대학(보조사업자)이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집행 주체이며, 민간컨소시엄 등(거래처)의 사업비 신청 등은 e-나라도움 매뉴얼 및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름

○ 지원대학은 사업비 중 **대학 자체부담금(교비)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교비를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또는 교비 집행잔액을 환수 조치**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기재부), 「고용노동 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19.1월, 고용부 훈령 제270호) 제20조제1항

○ 정부지원금은 사업기간(3월~익년 2월)을 달리하여 이월 불가

○ 지원대학은 다음 연도(2월말)까지 보조금을 집행해야 할 경우 **12월 10일까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이월 신청**

○ 국고보조예산의 집행 관련,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등 관련규정에 따름

2. 정부지원금 정산 및 정보공시

○ 지원대학은 전체 사업비 예산에 대해 정산 후, **당해 연도 사업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로 결과 보고

※ '사업정산보고서 및 정산내역서'(서식 13), 관련 지출 증빙자료 등 첨부

- **정부지원금이 3억원 이상**인 대학의 경우, 보조금이 교부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검증**을 받아 제출(관련 비용은 운영경비로 사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참조

※ **"감사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준용)

▲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

- 관할 고용센터는 정산보고서·증빙자료 등 검토 후 최종 정산금액을 확정, **'정산 결과 보고서'(서식 14)**에 따라 지방청(대표지청) 보고, 지방청은 그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본부 보고

※ 인건비 지급내역(임금대장 등) 등 사업비 항목별 지급내역, 증빙자료 등 확인

※ 각 고용센터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항목에 대하여는 해당 대학으로부터 증빙자료 제출을 최소화

○ 사업비 정산은 **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반납 받아야 하는 금액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국고 보조금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함(**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 불인정금액과 이자 포함**)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기재부)」 제26조,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훈령) 제22조(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 사업비 집행액(불인정금액 제외) 기준으로 국고/자부담금 매칭비율 미만으로 자부담금을 집행한 경우, 이에 미달하는 자부담금 미집행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하여야 함(별도 세입조치 등)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훈령) 제20조(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집행) 등에 따라, 집행액을 기준으로 최소한 매칭비율 이상은 대학이 부담하도록 조치 필요

※ 자부담금 환수금액에 대하여 보조금시스템을 통한 처리가 불가한 경우 별도 세입조치 등을 통하여 처리

<정산 예시>

○ 정부지원금 3억(60%), 대학자부담금 2억(40%)으로 사업비를 분담하여 운영하는 대학이 정부지원금 2억5천(잔액5천)과 대학자부담금 1억2천(잔액8천)을 합산한 3억7천만원을 집행한 경우
→ 대학자부담금이 과소 집행되었으므로 환수금액은, 1)정부지원금 집행잔액 5천만원 + 2) 대학자부담금 집행잔액 중 2,800만원

❖ 대학자부담금 과소 집행여부 확인방법 및 반납금액 산정방법

○ 자부담금 우선 집행원칙에 의거 정부지원금 및 대학자부담금 집행 합산액 3억7천만원 중 최소 40%인(매칭비율) 1억4천800만원 이상이 대학자부담금에서 집행되어야 함

○ 위 사례에서 대학 자부담금 집행액은 1억2천만원에 불과하므로 자부담금 우선 원칙에 부합하는 최소 집행기준액 1억4천800만원과의 차액인 2,800만원을 환수하여야 함

○ 만약 위 사례에서 대학이 자부담금 중 1억4천800만원 이상을 집행하였다면 각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정부지원금 집행잔액인 5천만원만 회수하면 됨(이자, 불인정액 등이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

- 사업비 항목별 사용비율을 초과하거나 미집행 된 예산은 원칙적으로 환수하되, 정당한 집행사유 등 확인 시 예외 인정

※ 운영비 40~55%(운영경비 5% 이내), 프로그램비 45~60% → 인건비-프로그램비 간에는 전용가능 비율(10%)을 초과한 금액 환수

- 자치단체·지역산업계 등과의 지역 공동·연계사업을 위해 지원대학들이 예산을 분담하는 경우, 해당 연계사업 주관기관이 작성한 전체 결산자료 등으로 정산 갈음

※ 단, 연계사업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학별 분담비율에 따라 반환

- 집행 증빙자료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거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행금액은 원칙적으로 환수

○ 지원대학은 사업의 완료 또는 사업 추진 중에 중단·폐지하거나, 자체 사정으로 인해 지속 추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을 반납

※ 연차별 지원금 정산에 준하여 정산보고서 등 제출

○ 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대학)은 2021년(2021.3~2022.2) 추진 사업에 대해 '22.4월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e나라도움에 공시하여야 하며, 불성실 공시에 따른 보조금 삭감 등 제재조치에 유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등

※ e나라도움 공시기능 사용방법은 e-나라도움 → 사용자매뉴얼 참조

4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1. 추진실적 관리

○ 관할 고용센터는 지원대학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학일자리센터가 설치목적·취지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유선 또는 현장방문), 지원대학은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

○ 지원대학은 사업운영 실적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되,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포함)의 실적보고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상담 참여인원,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참여인원, 진로 및 취·창업 교과 수강인원 등

- 지방청(대표지청)은 관할 고용센터별 사업실적을 취합, **본부에 보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는 연차별 성과평가 보고서로 대체

- 상담, 프로그램, 교과목 등 **각종 사업운영 실적**은 남·녀 학생을 구분하여 **'성별분리통계'**로 작성

※ 채용박람회·사업설명회 등 참석자의 성별분리 통계 작성이 곤란한 경우는 예외

2. 지도점검

○ 관할 고용센터는 관내 지원대학에 대해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동 지침 또는 지원약정 위반사실 등이 있어 조치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결과를 본부로 보고

- 정기 지도점검은 **매년 6~7월, 10~11월 중에 각 1회**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로 유선·서면 또는 현장점검 실시 가능**

☞ 단,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반영, **'21년은** 연 2회(6~7월, 10~11월 중 각 1회)에서 **연 1회(10~11월 1회)로 변경**

※ 지도점검 시 '대학일자리센터 점검표'(서식 15) 활용

※ **점검방법은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 등 관서별 자율 결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8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집행 점검'과 병행 실시 가능
- 위 정기 지도점검 외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월 1회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상시 점검 실시 및 결과 등록 등 관리**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56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개정법률안

> **제32조 보조사업 집행점검** ② 중앙관서의 장은 내역사업내 모든 상위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전송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 1. 보조사업자 또는 하위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의 세부 집행내역
> 2.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 3.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의 월 집행마감 결과 대조후 일치여부

○ 관할 고용센터는 지원대학이 지원금 사용 및 센터 운영 등과 관련하여 동 지침, 지원약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에 따라 조치

- 처분내용 중 **지원약정 해지(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의견청취 후 처분

※ 청문·의견청취 등 절차 및 관련 서식은 「행정절차법」 적용

○ 지원대학은 관할 고용센터의 점검 및 시정조치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및 시정요구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지방청(대표지청) 고용센터로 이의제기 가능

○ 관할 고용센터는 시정조치 결과 확인 후 종결 처리

참고 대학일자리센터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

가. 지원대학의 지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아래 기준에 따라 조치하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경감 가능(약정해지 해당 시 시정조치)

나. 최근 1년 이내에 시정요구를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장의 검토·판단에 따라 약정계약 해지 가능

다.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환수범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름

구 분	위 반 행 위	조 치 기 준
사업 운영 관련	**① 지원약정, 사업계획, 시행지침 준수 여부**	
	▲ 주요 사업내용의 무단 변경 등 위반정도가 중하여 사업목적을 크게 훼손한 경우	▲ 경고, 시정조치(2주간) ▲ 불이행 시 약정해지 및 익년도부터 2년간 사업참여 제한
	- 기타 위반정도가 낮은 경우	▲ 경고, 현지시정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자대생·졸업생, 타대생 및 인근 지역 청년 등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대형)	▲ 경고, 시정조치(1주간)
	③ 상담·비교과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내용·이력 등에 대한 실적관리를 해태한 경우	▲ 경고, 현지시정
	④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경우	▲ 경고, 시정조치(2주간) ▲ 불이행 시 약정해지
	⑤ 컨소시엄 기관 자격요건 확인 등 주기적으로 관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경고, 시정조치(2주간) ▲ 불이행 시 약정해지
	⑥ 컨설턴트 채용, 변경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경고, 시정조치(2주간)
지원금 활용 관련	**⑦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받거나 받고자 한 경우**	
	- 10백만원 이상	▲ 약정해지 및 보조금 반환처분 ▲ 향후 사업참여 제한
	- 10백만원 미만	▲ 약정해지 및 보조금 반환처분
	⑧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사업비의 부적정 사용	
	-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 경고, 보조금 반환처분
	-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경고, 시정조치(2주간)
	⑨ 구인기업, 학생 등 서비스 대상자로부터 금품을 수령한 경우(컨소시엄기관 포함)	▲ 경고, 시정조치(1주간) ▲ 불이행 시 약정해지
기 타	**⑩ 고용센터의 지도·점검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경고, 시정조치(1주간)
	⑪ 3회 이상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받고도 개선하지 않거나 유사한 사례가 2회 이상 재발하는 경우	▲ 약정해지 및 익년도부터 1년간 사업참여 제한

3. 성과평가

○ **(평가기간 및 평가시기)** 매 사업연도별 추진실적에 대해 연차별 사업기간 종료 후 성과평가 진행

※ <연차성과평가>
- 2021년도 사업(2021.3.~2022.2.)은 2022년 초에 성과평가

○ **(평가결과 적용)** 매년 성과평가 실시, 사업기간 중 일정 횟수 이상 '미흡' 또는 '우수' 평가 시, 불이익 또는 인센티브 부여

- **(성과 저조대학)** 사업기간(5년) 중 2회 '미흡' → 소형전환 → 전환 후 '미흡' → 중단
  * 소형 사업은 사업기간 중 2회 미흡 시 '지원중단'
- **(성과 우수대학)** 사업기간(5년) 중 3회 '우수' → 추가 1년 사업비 지원(예산범위 내)
  * 소형 사업 중 평가 '우수' 대학은 순위에 따라 차년도 대형사업 전환 기회 부여 (잔여예산 범위 내)

* '15년~'16년 선정 대학(41개) 중 후반기(3년) 사업에 대해 지원약정 체결이 완료된 대학의 연차 평가결과 적용은 인센티브 사항 위주로 부여

○ **(평가주관)** 총괄지원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이 구성한 평가위원회 주관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관할 고용센터 및 민간전문가 참여

※ 일부 평가지표(지역 청년고용거버넌스 등)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평가

○ **(평가원칙·방식)** 대학의 **원스톱 청년고용지원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시스템 정착·향상을 위한 정성적 노력과 **양질의 청년 진로취업 지원 서비스의 제공** 성과에 중점을 두고, 2년차 이후 평가는 **전년도 이후 변화** 여부를 중점 확인

- **대형** 대학일자리센터 평가는 **지역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노력과 성과 확인
- 대학별로 제출한 **"성과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절대평가 방식)
- **평가위원회**는 운영대학의 전년도 사업운영 실적이 매우 미흡하거나 향후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 및 성과에 대한 허위 보고 등이 발견되는 경우, **성과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음(추가 평가 실시, 사업유형 변경 권고, 집중관리 대학 지정 등)

※ 우수(80점 이상), 보통(79~60점), 미흡(60점 미만) 등 3단계 평가

평가영역	대형		소형	
	배점(정량)	지표	배점(정량)	지표
Ⅰ. 원스톱 진로·취업지원 인프라	23 (0)	5개	24 (0)	5개
Ⅱ. 진로, 취·창업 지원서비스	46 (20)	11개	51 (23)	10개
Ⅲ. (대형) 지역 청년고용지원서비스 및 청년체감도	21 (14)	4개	-	-
Ⅲ. (소형) 청년고용정책 체감도 제고	-	-	15 (10)	3개
Ⅳ. 연차별 개선 및 유지	10 (0)	1개	10 (0)	1개
계	**100 (34)**	**21개**	**100 (33)**	**19개**

* 총점(100점 만점) 외 최대 10점까지 가감점 가능

- 평가는 성과평가 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 개별 대학에 대한 실사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실시

Ⅳ. 행정사항 및 경과조치

Ⅳ 행정사항 및 경과조치

1. 시행시기

○ 동 지침은 **'21. 4. 16.부터 적용**하며, 추후 지침 개정 전까지는 동 지침에 따름

2. 경과조치

○ 동 지침 시행('21.4.16.) 이전까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 시행 지침('19.11월)에 따름

- 다만, 성과평가, 사업비 세부내역 편성, 센터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개시부터 동 지침이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필요시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 변경 허용)

붙임 및 서식

[붙임 1] '21년도 정부재정지원 가능 대학 명단 ····· 59
[붙임 2] 성과평가 추진계획 ····· 61

[서식 1] 지원신청서 및 관련 사업 수행실적 ····· 68
[서식 2] 사업계획서 ····· 70
[서식 3] 예산집행계획서 ····· 75
[서식 4] 민간전문기관 사업체 현황 ····· 76
[서식 5] 사업계획 기초검토서 ····· 77
[서식 6] 종합 검토의견서 ····· 79
[서식 7] 1차 심사결과표 ····· 80
[서식 8] 지원약정서 ····· 81
[서식 9] 약정변경 신청서 ····· 84
[서식 10] 지원금 신청서 ····· 85
[서식 11] 국고보조금 교부통지 및 교부조건서 ····· 86
[서식 12] 보조사업자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89
[서식 13] 사업정산보고서 및 정산내역서 ····· 90
[서식 14] 정산결과보고서 ····· 92
[서식 15] 대학일자리센터 점검표 ····· 93

붙임 1 '21년도 정부재정지원 가능 대학 명단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중 정부재정지원 가능 대학

구분	학 교 명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156개교)	**<자율개선대학>**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꽃동네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진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동덕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영산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주대학교, 초당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케이씨(KC)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협성대학교, 호남대학교, 호서대학교, 호원대학교, 홍익대학교 **<역량강화대학 등>** 가야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건양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동대학교, 극동대학교, 김천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양대학교, 목원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상지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한영신학대), 세한대학교, 송원대학교, 수원대학교, 순천대학교, 신한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 예수대학교, 우석대학교, 위덕대학교, 유원대학교, 인제대학교, 조선대학교, 중원대학교, 창신대학교, 청운대학교, 평택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라대학교
전문대학 (125개교)	<자율개선대학> 가톨릭상지대학교, 강동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군장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농협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원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주대학교, 마산대학교, 문경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일대학교, 선린대학교, 수성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성대학, 아주자동차대학, 안동과학대학교, 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성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연암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건

구분	학 교 명
	대학교, 유한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청암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혜전대학교, 호산대학교
	<역량강화대학 등> 강릉영동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북과학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국제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김포대학교, 김해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동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목포과학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서정대학교, 성운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인덕대학교, 장안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한영대학교

붙임 2 성과평가 추진계획

Ⅰ. 대학일자리센터 연차성과평가 개요

1 연차별 성과평가 개요

○ **(평가기간 및 평가시기)** 매 사업연도별 추진실적에 대해 연차별 사업기간 종료 후 성과평가 진행

※ <연차성과평가>

- 2021년도 사업(2021.3.~2022.2)은 2022년 초에 성과평가

○ **(평가결과 적용)** 매년 성과평가 실시, 사업기간 중 일정 횟수 이상 '미흡' 또는 '우수' 평가 시, 불이익 또는 인센티브 부여

- **(성과 저조대학)** 사업기간(5년) 중 2회 '미흡' → 소형전환 → 전환 후 '미흡' → 중단
  * 소형 사업은 사업기간 중 2회 미흡 시 '지원중단'
- **(성과 우수대학)** 사업기간(5년) 중 3회 '우수' → 추가 1년 사업비 지원(예산범위 내)
  * 소형 사업 중 평가 '우수' 대학은 순위에 따라 차년도 대형사업 전환 기회 부여 (잔여예산 범위 내)

* '15년~'16년 선정 대학 중 후반기(3년) 사업에 대해 지원약정 체결이 완료 된 대학의 연차 평가결과 적용은 인센티브 사항 위주로 부여

○ **(평가주관)** 총괄지원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이 구성한 평가위원회 주관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관할 고용센터 및 민간전문가 참여

※ 일부 평가지표(지역 청년고용거버넌스 등)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평가

○ **(평가원칙·방식)** 대학의 **원스톱 청년고용지원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시스템 정착·향상을 위한 정성적 노력과 **양질의 적극적 대면·비대면 청년 진로취업 지원 서비스의 제공** 성과에 중점을 두고, 2년차 이후 평가는 **전년도 이후 변화** 여부를 중점 확인

-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서비스 추진 한계, 청년실업 상황으로 인한 청년에의 적극적 지원 필요성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 **대면·비대면 노력을 통한 청년 고용지원서비스** 노력과 성과 확인

- 대학별로 제출한 **“성과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절대평가 방식)

- **평가위원회**는 운영대학의 해당 년도 사업운영 실적이 매우 미흡하거나 향후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 및 성과에 대한 허위 보고 등이 발견되는 경우, **성과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음 (추가평가 실시, 사업유형 변경 권고, 집중관리 대학 지정 등)

※ 우수(80점 이상), 보통(79~60점), 미흡(60점 미만) 등 3단계 평가

평가영역	대형		소형	
	배점(정량)	지표	배점(정량)	지표
Ⅰ. 원스톱 진로·취업지원 인프라	23 (0)	5개	24 (0)	5개
Ⅱ. 진로, 취·창업 지원서비스	46 (13)	11개	51 (20)	10개
Ⅲ. (대형) 지역 청년고용지원서비스 및 청년체감도	21 (10)	4개	-	-
Ⅲ. (소형) 청년고용정책 체감도 제고	-	-	15 (10)	3개
Ⅳ. 연차별 개선 및 유지	10 (0)	1개	10 (0)	1개
계	**100 (23)**	**21개**	**100 (30)**	**19개**

* 총점(100점 만점) 외 5~10점까지 가감점 가능

- 평가는 성과평가 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 개별 대학에 대한 실사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실시

※ 2020년도(2020.3~2021.2)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급격한 변화상황으로 인하여 정량적 실적 등이 한시적으로 조정된 바, **2021년도 사업추진(2021.3~2022.2)의 연차성과평가에 대한 세부 기준치 등의 상세 사항은 추후 별도 배포**

2 평가목적 및 근거

1) 평가목적

○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운영에 대한 연차평가**를 통해 대학별 **사업계획 이행여부 및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사업방식 등 개선에 활용**

○ 사업 **추진성과 모니터링**을 통한 **우수모델·사례 발굴 및 확산**

○ 대학별 **자체 평가**를 통한 개선계획 도출, **평가·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병행하는 **선순환적 성과관리방식**을 통한 성과향상 및 개선 유도

2) 평가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 「고용노동 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고용부 훈령 제231호)

○ 「대학일자리센터 시행지침」, Ⅲ-④-3(성과평가)

3 평가개요 및 지표 구성

1) 평가개요

○ **(주관기관)** 사업 총괄지원(컨설팅·모니터링 수행) 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 주관으로 **'대학일자리센터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외부 민간전문가·고용센터 관계자 등을 포함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 대학별 면담 및 현장실사 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 등 참석

○ **(평가시기)** 매 연도별 **사업기간(3월~익년 2월) 기준으로** 평가. 단, 면담 및 현장실사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시기 **조정 가능**

구분	추진 계획(안)	비고
대학일자리센터 청년정책체감도 조사	'21. 10월	인지도·만족도 반영
성과평가 보고서 제출	'21. 12월	별도 상세 일정 안내
평가위원회 평가 기간	'22. 1~2월	

○ **(평가방법)** 대학별로 제출한 **'성과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 및 실사평가**(절대평가 방식)

* 성과평가 보고서 서식·작성방법 등을 포함한 매뉴얼은 대학에 사전 안내(고용정보원)

※ 코로나19 상황·평가추진 일정 등에 따라 방문·집합·비대면방식 면담실사 중 변경 추진 가능

○ **(평가등급)** '우수·보통·미흡' 등 3단계 평가(100점 만점)

우수	보통	미흡
80점 이상	60점 이상 ~ 80점 미만	60점 미만

2) 연차성과평가 지표 구성 및 개선 방향

가) 기존 평가체계 유지

○ 사업추진의 일관성·안정성 위해, **대형 및 소형 평가지표 체계(틀)는 전년도 유지**

- 서비스 제공 형태에 대해서는 **대면·비대면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적으로 인정**

○ **정량실적**에 의한 평가 항목은 **만점기준치 조정 및 일부 정성 전환**

- 집합 서비스 곤란, 거리두기로 대규모인원 대면집합 곤란. 채용기회 급감으로 채용박람회·설명회·구직클리닉 수요 급감 등 상황 반영
- 코로나19로 인한 캠퍼스 출입 통제·집합 곤란·채용 기회 급감 등의 상황 반영하여 정량실적 기준 하향 및 일부 지표 정성 전환
- 대면·비대면 병행(특정 방법에 대한 상한선 등은 두지 않으며, 지역·대학 상황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 제공 노력사항은 정성지표에서 판단하여 반영)에 따른 정량 및 정성지표 조정 반영

※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급격한 변화상황으로 인하여 일부 평가지표 기준이 한시적으로 조정된 바, **2021년도 사업추진의 연차성과평가에 대한 세부 기준치 등의 상세 사항은 추후 별도 배포**

- 2020년의 경우, ❶ 정량지표 중 ①상담 제공 및 ②프로그램 운영의 목표 기준 하향 조정, ❷ 4개* 분야의 정량평가 지표를 정성지표로 전환, ❸ 비대면 서비스 제공 노력을 정성적으로 반영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을 고려하여 연차성과 평가를 수행한 바 있음.

* 여대생 특화 프로그램, 해외취업지원, 재학 중 일경험 참여, 지역청년층 서비스 제공

나) 대형 및 소형 대학 일자리센터 지표 구성방향

대형 대학일자리센터

○ 대학일자리센터로서 재학생 등 청년에게 **원스톱 진로·취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수준 확인

○ 저학년부터의 체계적인 **진로·취창업지원** 서비스를 대다수의 재학생 등 청년에게 제공하기 위한 체계의 마련 및 내실 있는 **서비스 제공 성과** 확인

○ 지역**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실적 및 청년고용지원정책 전달체계로서의 **정책체감도 제고 성과** 확인

○ 정량성과 뿐만 아니라 **인프라·시스템 확충** 및 **내실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성적 노력** 평가 강화

○ 코로나19 및 청년고용 위기상황에도 양질의 적극적 청년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노력 확인

소형 대학일자리센터

○ 대학일자리센터로서 재학 중인 청년에게 **원스톱 진로·취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수준 확인

○ 저학년부터의 체계적인 **진로·취창업지원**서비스를 대다수의 재학생에게 제공하기 위한 체계의 마련 및 내실있는 **서비스 제공 성과** 확인

○ 청년고용지원 정책전달체계로서의 **정책체감도 제고 성과** 확인

○ 정량성과 뿐만 아니라 **인프라·시스템 확충** 및 **내실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성적 노력** 평가 강화

○ 연차별 변화 및 유지 사항에 대한 평가

○ 코로나19 및 청년고용 위기상황에도 양질의 적극적 청년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노력 확인

Ⅱ. 대형 대학일자리센터 평가지표 및 배점

○ **평가대상:** 대형 대학일자리센터

○ **배점기준:** 100점(정량 **23**), 가점 +5 감점 -5

※ 음영표시: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평가지표 조정사항으로 21년 연차성과평가시 조정될 수 있음. 향후 상세 배포 예정

평가영역 및 주요 지표			배점 하한	배점 상한	개요
Ⅰ. 원스톱 진로·취업지원 인프라				**23**	
	구조	1. 대학내 진로·취창업 지원 기능 통합·연계	0	6	·(정성) 진로·취창업서비스 원스톱 제공을 위한 구조 조성, 공간적·기능적 원스톱화
	조직	2. 대학일자리센터의 기능·위상 강화	0	3	·(정성) 교무위원급 센터장 임명, 직제 반영, 대학 내 진로취업전담부서 조직 위상 강화
	인력	3. 대학일자리센터 인력의 전문성 강화	0	5	·(정성) 전담전문인력의 고용안정성(정규직화·업무 지속성 유지) 강화 및 교육 등 전문성 제고 지원
		4. 진로취업지원에 대한 학과·교수의 역할 강화	0	3	·(정성) 학과 및 교수 역할 강화 노력과 성과
	전산	5. 경력개발시스템 구축 및 활용성 강화	0	6	·(정성) 원스톱 온라인 경력개발지원 시스템 구축 및 활용도 제고, 워크넷 등 연계
Ⅱ.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46**	
	체계	1. 진로·취창업지원 체계 구축·활용	0	8	·(정성)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활용 정도
	상담	2. 진로·취창업관련 상담서비스 충실성	0	5	·(정성) 진로취업상담 체계화·내실화 노력·성과
		3. 진로·취창업관련 상담서비스 제공	0	4	**·(정량) 재학생수 대비 상담 참여율**
	교과	4. 진로교과 필수화 및 운영 내실화	0	5	·(정성) 진로교과 필수화 및 진로취업교과 운영 내실화 노력과 성과
		5. 진로·취창업 관련 정규교과목 운영	0	4	·(정량) 재학생수 대비 교과목 이수율
	비교과	6.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자체 기획 및 내실화	0	5	·(정성) 대학의 기획 및 내실화 노력과 성과
		7. 진로·취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0	5	**·(정량) 재학생수 대비 프로그램 참여율**
		8. 여대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	0	2	**·(정성) 여학생수 대비 프로그램 제공 노력**
		9.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0	2	**·(정성) 해외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노력**
	일경험	10. 재학 중 일경험 참여 지원	0	3	·(정성) 재학생 일경험 제공·지도 노력
	매칭	11. 산학협력, 기업 연계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0	3	·(정성) 취업알선, 산학연계 등 취업지원 노력
Ⅲ. 지역 청년고용지원서비스 및 청년체감도				**21**	
	지역청년	1. 지역 청년고용거버넌스 구축·활성화	0	3	·(정성) 지역단위 연계·협업 노력·성과
		2. 지역청년층 대상 진로·취업지원서비스 제공	0	6	**·(정성) 지역청년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노력**
	청년체감도	3. 청년고용정책 및 대학일자리센터 체감도 제고	0	2	·(정성) 청년고용정책 및 대학일자리센터 서비스 체감도 제고 노력
		4. 재학생 정책인지도 및 서비스 만족도*	0	10	·(정량) 재학생 인지도 · 만족도 점수
Ⅳ. 연차별 개선 및 유지				**10**	
	유지	**1. 연차별 개선 상황 및 성과유지관리***	0	10	·(정성5) 연차별 개선 및 이행상황, 인프라 등 전년도 성과이행 사항의 유지관리 수준 **·(정성5) 코로나19 상황에도 양질의 서비스 제공 위해 추진한 노력**
계				**100**	
<가점> 언론보도, 수상실적 등			0	5	·(정량) 언론보도 및 수상실적(건)
<감점> 경고 처분 및 문제사항·허위실적 발견 등*			-5	0	·(정량·정성) 관할 고용센터 경고 처분 건수, 사업 이행 관련 중대 문제 사항 확인 및 실적 조작·허위 사항 등 확인 시 감점

*표시한 지표는 대학일자리센터 자체 성과평가보고서에 별도 기술·작성하지 않는 사항임.

Ⅲ. 소형 대학일자리센터 평가지표 및 배점

○ **평가대상:** 소형 대학일자리센터

○ **배점기준:** 100점(정량 30), 가점 +10 감점 -5

※ 음영표시: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평가지표 조정사항으로 21년 연차성과평가시 조정될 수 있음. 향후 상세 배포 예정

평가영역 및 주요 지표			배점 하한	배점 상한	개요
Ⅰ. 원스톱 진로취업지원 인프라				24	
	구조	1. 대학내 진로·취창업 지원 기능 통합·연계	0	6	· (정성) 진로·취창업 서비스 원스톱 제공을 위한 구조 조성, 공간적 · 기능적 원스톱화
	조직	2. 대학일자리센터의 기능·위상 강화	0	4	· (정성) 교무위원급 센터장 임명, 직제 반영, 대학 내 진로취업전담부서 조직 위상 강화
	인력	3. 대학일자리센터 인력의 전문성 강화	0	5	· (정성) 전담 전문 인력의 고용안정성(정규직화·업무지속성 유지) 강화 및 교육 등 전문성 제고 지원
		4. 진로취업지원에 대한 학과·교수의 역할 강화	0	3	· (정성) 학과 및 교수 역할 강화 노력과 성과
	전산	5. 경력개발시스템 구축 및 활용성 강화	0	6	· (정성) 원스톱 온라인 경력개발지원 시스템 구축 및 활용도 제고, 워크넷 등 연계
Ⅱ.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51	
	체계	1. 진로·취창업지원 체계 구축·활용	0	8	· (정성)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활용 정도
	상담	2. 진로·취창업관련 상담서비스 충실성	0	5	· (정성) 진로취업상담 체계화·내실화 노력·성과
		3. 진로·취창업관련 상담서비스 제공	0	6	**· (정량) 재학생수 대비 상담 참여율**
	교과	4. 진로교과 필수화 및 운영 내실화	0	5	· (정성) 진로교과 필수화 및 진로취업교과 운영 내실화 노력과 성과
		5. 진로·취창업 관련 정규교과목 운영	0	6	· (정량) 재학생수 대비 교과목 이수율
	비교과	6.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자체 기획 및 내실화	0	5	· (정성) 대학의 기획 및 내실화 노력과 성과
		7. 진로·취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0	8	**· (정량) 재학생수 대비 프로그램 참여율**
		8.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0	2	· (정성) 해외취업 활성화 위한 노력·성과
	일경험	**9. 재학 중 일경험 참여 지원**	0	3	**· (정성) 재학생 일경험 제공·지도 노력**
	매칭	10. 산학협력, 기업 연계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0	3	· (정성) 취업알선, 산학연계 등 취업지원 노력
Ⅲ. 청년고용정책 체감도 제고				15	
	청년 체감도	1. 고용센터 등 지역 청년 유관 기관과의 협업	0	3	· (정성) 지역단위 연계·협업 노력·성과
		2 청년고용정책 및 대학일자리센터 체감도 제고	0	2	· (정성) 청년고용정책 및 대학일자리센터 서비스 체감도 제고 노력
		3. 재학생 정책인지도 및 서비스 만족도*	0	10	· (정량) 재학생 인지도 · 만족도 점수
Ⅳ. 연차별 개선 및 유지				10	
	유지	**1. 연차별 개선 상황 및 성과유지관리***	0	10	· (정성 5) 연차별 개선 및 이행상황, 인프라 등 전년도 성과이행 사항의 유지관리 수준 **· (정성 5) 코로나19 상황에도 양질의 서비스 제공 위해 추진한 노력**
계				100	
	<가점> 언론보도, 수상실적 등		0	5	· (정량) 언론보도 및 수상실적
	<가점> 지역청년층 대상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0	3	**· (정성) 지역청년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노력**
	<가점> 여대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		0	2	**· (정성) 여학생수 대비 프로그램 제공 노력**
	<감점> 경고 처분 및 문제사항·허위실적 발견 등*		-5	0	· (정량·정성) 관할 고용센터 경고 처분 건수, 사업이행 관련 중대 문제사항 확인 및 실적 조작·허위 사항 등 확인 시 감점

* 표시한 지표는 대학일자리센터 자체 성과평가보고서에 별도 기술·작성하지 않는 사항임

서식 1 지원신청서 및 관련 사업 수행실적

대학일자리센터( ) 사업 지원신청서

<table>
<tr><td rowspan="8">기 관
현 황</td><td>대 학 명</td><td colspan="2"></td><td>법인등기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소 재 지</td><td colspan="3"></td><td>재학생 수</td><td></td></tr>
<tr><td>대 표 자
(총 장)</td><td colspan="2"></td><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담 당 자</td><td>소속 및 직위</td><td>연락처
(사무실/휴대전화)</td><td colspan="3">E-mail</td></tr>
<tr><td></td><td></td><td colspan="3"></td></tr>
<tr><td>학 제</td><td colspan="5">☐ 4년제, ☐ 전문대(☐ 2년제, ☐ 3년제), ☐ 산업대학</td></tr>
<tr><td>컨소시엄
기관명</td><td colspan="5">※ 민간전문기관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작성</td></tr>
<tr><td colspan="2">참여
희망사업</td><td colspan="5">대학일자리센터(○○사업)</td></tr>
</table>

년도 대학일자리센터(○○사업) 운영대학 선정공모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학교 총장 (인)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 소장 귀하

※붙임 : 관련 사업 수행실적

【붙 임】

관련 사업 수행실적

(1) 최근 3년간 공모대상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 실적

연도	발주기관	사업명	사업비 규모	사업내용 및 실적
2016				
2017				
2018				

* 발주기관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 위탁 기관 또는 부처명 기재
** 사업비 규모 : 위탁받아 실제 지원받은 사업비 규모를 기재(단위: 천원)
*** 사업내용 및 실적 : 실시인원을 포함하여 계량 지표로 기재

(2) 기타 취업지원 유관분야 사업수행 실적

연도	발주기관	사업명	사업비 규모	사업내용 및 실적
2016				
2017				
2018				

* 발주기관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 위탁 기관 또는 부처명 기재
** 사업비 규모 : 위탁받아 실제 지원받은 사업비 규모를 기재(단위: 천원)
*** 사업내용 및 실적 : 실시인원을 포함하여 계량 지표로 기재

대학일자리센터 사업계획서

※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재하고, 기재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필요시 첨부(전년도 12.1.기준으로 작성)*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의 분량은 200페이지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기재내용에 따라 별지작성 및 서식은 변경 가능*

Ⅰ. 대학 현황

1 취업·창업지원 관련 교내 기관 현황

명칭	소속기관	주요업무	설치일	설치근거	인원

<대학 조직도(대학일자리센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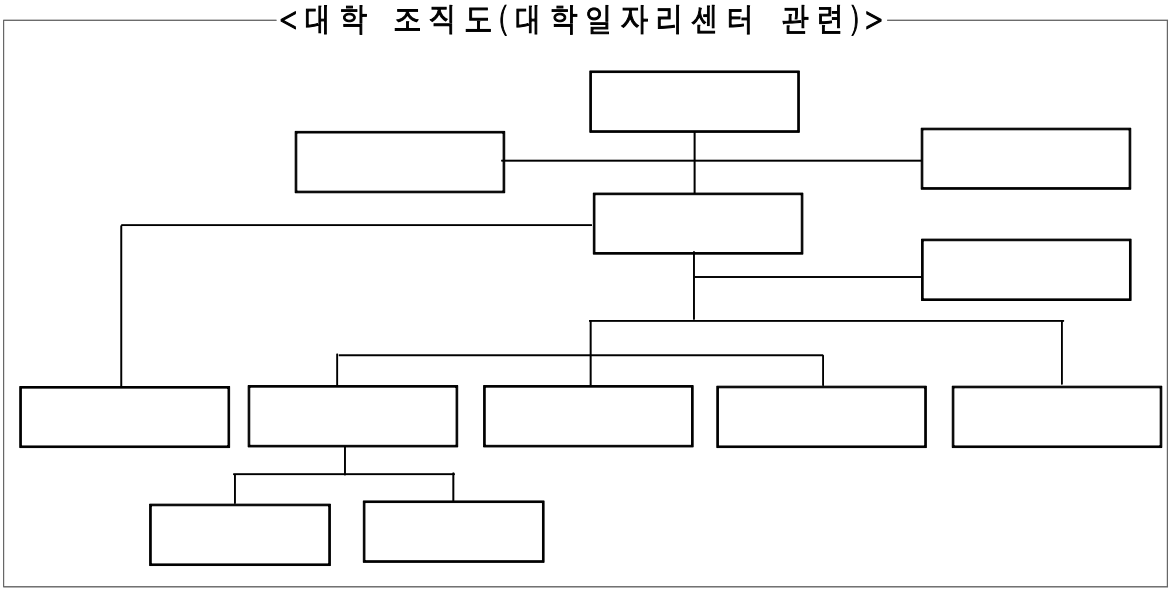

2 취업지원 관련 대학의 재정지원 현황(인건비, 사업비 등)

※ 당해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

(단위: 명, 백만원)

명칭	소속기관	인원	인건비총액	사업비 총액	비고

3 대학취업지원부서(인력) 현황

구 분	내 용					
위 상	*※ 대학기구 내 위상, 센터장의 지위, 대학일자리센터로의 개편여부 등 기재*					
직원현황	총 직원수	명	행정직	명	전문인력*	명
성 명	직 위	취업지원부서 근무기간	관련학위	관련 자격증	비 고	
		○년○개월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등 기재	
당해연도 예 산	대학 총예산 (A)	백만원	취업지원부서 예산 (B)	백만원	비율 (B/A)	%
운영계획	※ 민간컨설턴트 투입에 따른 기존 취업지원부서 근무인원 정(현)원 임의 조정 방지대책, 정규직 전환 계획 등을 포함하여 기재					

* 소정의 경력(취업관련 업무 평균 3년) 혹은 자격증(직업상담사 등)을 가지고 취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

※ 위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첨부

※ 직원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페이지로 작성 가능

④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교과목 개설 현황

○ 진로지도 관련 교과목

교과목명	인정학점	개설학기	강의정원	강의수	전공/교양	비고

○ 취업지원 관련 교과목

교과목명	인정학점	개설학기	강의정원	강의수	전공/교양	비고

○ 창업지원 관련 교과목

교과목명	인정학점	개설학기	강의정원	강의수	전공/교양	비고

□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진로지도 관련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운영일정	참여인원	세부내용

○ 취업지원 관련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운영일정	참여인원	세부내용

○ 창업지원 관련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운영일정	참여인원	세부내용

Ⅱ. 사업추진계획(당해연도 3월 ~ 익년도 2월)

※ 공고문·사업개요 및 「대학일자리센터 시행지침」 등을 참고하여 2년간 사업계획을 연도별로 상세히 작성하고, 5년간의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

※ 별지 작성 가능, 기재 내용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1 사업목표

○

-

2 대학일자리센터 설치계획

※ 취·창업관련 대학행정부서 및 사업단 등 연계체제 구축(대학일자리센터에서 총괄·조정할 수 있는 대학 내 위상 부여, 센터장은 처장·교무위원급 이상으로 배치) 및 대학 내 청년고용협의회 설치·운영 등

※ 대학일자리센터 설치 위치(공간규모, 학생 수, 학교여건 등 고려)

※ 대학일자리센터에 대한 학교 측의 인력(행정인력 등), 집기, 부품 등 편의시설 제공 계획

※ 학생들이 대학일자리센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학교 측 지원방안

○

-

3 취업인프라 개선

※ 학사제도 제정 및 개정 사항

※ 교수, 교직원, 민간컨설턴트 등의 취업지원 역량강화 세부 추진계획을 반드시 포함

※ 취업지원인력의 정규직 전환계획 반드시 포함

※ 단,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추진으로 학교에서 기 추진 중인 취업지원 인프라, 사업규모 등이 축소되지 않아야 함

○

-

4 진로 및 취·창업 지원 서비스 강화

○

-

5 해외취업지원

○

-

6 청년고용정책 체감도 제고

○

-

7 외부기관과의 협업

※ 고용(복지+)센터, 자치단체,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고용존 등과의 협업계획으로, 소형사업 운영대학의 경우에는 필요 시 작성

※ 단, 고용센터·지자체와의 상시적 소통 및 연계 계획은 반드시 포함(소형사업도 해당)

○

-

8 기대효과

○

-

서식 3 예산집행계획서

예 산 집 행 계 획 서

1 총사업비: 6억원(소형은 2억) 기준으로 작성 (① + ② + ③)

2 '19년도 사업예산: _____ **만원**

○ 정 부 지원금(①): _____ 천원(%)

○ 지자체 부담금(②): _____ 천원(%)

○ 대 학 부담금(③): _____ 천원(%)

3 세부사업별 예산집행계획 (총사업비 기준)

(단위: 천원)

항목			소요예산				산출내역
			계	정 부 지원금	지자체 부담금	대 학 부담금	
총 계							
운영비	인건비	소계					
	운영경비	소계					
프로그램비		소계					

서식 4 민간전문기관 사업체 현황

민간전문기관 현황 및 사업실적

※ 민간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에만 작성

1 종사자 현황

○ 총 종사자 수(대표자 포함): _____명

○ 종사자 중 전문 취업컨설턴트 현황

성 명	직 위	자격 및 경력사항(취업지원 유관분야)

※ 대표자 및 임원은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본적 별도 기재 제출

2 물적 현황(시설 등)

※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등 시설보유 현황(면적 등) 기재

3 경영 상황

※ 현재 사업체 자산 및 부채, 매출액, 영업이익 등 경영상태를 간략히 요약하고 입증자료 등 첨부

서식 5 사업계획 기초검토서

대학일자리센터 사업계획 기초검토서

대학 현황	대 학 명	○○대학교	총 장	○ ○ ○
	소 재 지	서울시 00구 △△로 1	대학유형	*예) 4년제(일반), 4년제(산업), 전문대 등 (사립 / 공립 구분 명시)*
	재학생수	명(대학알리미 기준, 정원내)	취 업 률	%(대학알리미 기준)
	신청구분	*대형, 소형, 소형(대형전환 희망)*	컨소시엄	*예) 00기관, ○○대학 등*

심사기준(배점)		검토의견
종합의견		○ 글자크기 10, 줄간격 120, 장평 90, 자간 -5, 문단위 4, 문단아래 0 -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신청대학의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 역량·인프라, 센터 설치·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대학경영진 등의 사업수행 의지, 보완 필요사항 등에 대한 총평 기재*
진로 및 취·창업 지원 인프라 구축 (30점) *소형 40점	진로 및 취·창업 지원 인프라 현황 (20점) *소형 20점	○ - ※ *주요 작성내용(사업계획서 상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작성하되, 미흡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기재)* ▲ *교내 관련기관·조직 및 대학 내 위상, 취업지원 관련 예산, 지원인력 등 현황* ▲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 관련 교과목수 및 '16년 수강인원, 비교과 프로그램수 및 수강인원, 교수-교직원-컨설턴트 등 대상 역량강화 교육·연수계획 등*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참여실적(취업지원관, 대학청년고용센터 등)* ▲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에 대한 대학 경영진 및 교직원들의 의지와 비전*
	대학 일자리 센터 설치·운영 계획 (10점) *소형 20점	○ - ※ *주요 작성내용(사업계획서 상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작성하되, 미흡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기재)* ▲ *대학 내 취·창업지원 기능의 공간적 통합 및 기능적 연계방안이 가능한지 여부* ▲ *센터장의 지위(교무위원급 이상) 및 조직의 위상, 센터 설치위치의 적정성 등* ▲ *학교 측의 인력·시설 확충 등 지원계획, 진로지도 및 취·창업 관련 교과목 개편계획, 학생종합경력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민간컨설턴트 등 전문지원인력의 정규직 변경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 서비스 강화 (60점) *소형 60점	진로 지도 및 취·창업 지원 서비스 강화 (35점) *소형 35점	○ - ※ *주요 작성내용(사업계획서 상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작성하되, 미흡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기재)* ▲ *체계적 진로지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 *적성·전공 등을 고려한 진로목표 설정 지원계획, 진로교과목 필수교과 지정 등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진로지도 서비스를 제공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 *중소기업탐방, 재학생직무체험, 현장실습 등 체험형 및 취업연계형 일경험 프로그램 계획 포함여부* ▲ *진로취업지원 전담교수 지정운영, 교수의 진로지도 참여, 대창센터 및 전공·학과 간 연계계획 등 포함 여부* ▲ *교수·교직원 대상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역량강화 교육계획 포함여부 등* ▲ *취업지원서비스 강화계획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성과달성이 가능한지 여부(타대생 및 인근지역 청년층에 대한 서비스는 필수적으로 포함)* ▲ *취업지원 관련 교과 개편, 취업박람회·취업강좌·취업캠프, 현장실습 등 각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포함 여부* ▲ *재학생직무체험, 중소기업탐방, 청년취업아카데미, 취성패 등 정부의 청년취업지원 사업 참여계획 포함 및 적절성 여부*
	해외 취업 지원 역량 (10점) *소형 10점	○ - ※ *주요 작성내용(사업계획서 상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작성하되, 미흡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기재)* ▲ *해외취업 전문인력 배치, 해외취업박람회 개최, 해외취업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계획 등의 실현가능성* ▲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상담, 경로설정 등 해외취업지원 관련 진로지도 계획이 적절한지 여부* ▲ *해외취업지원 관련 교과목 개편 및 학점인정 과정인지 여부 등*
	청년 고용 정책 체감도 제고 (15점) *소형 15점	○ - ※ *주요 작성내용(사업계획서 상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작성하되, 미흡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기재)* ▲ *정부의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인지도, 체감도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 홈페이지 개편 등 온라인 홍보계획, 대창센터 접근성 제고, 자체 체감도 조사 계획 등이 적정하고 실현가능한지 여부 등*
지역 청년 거버넌스 (10점) *소형 자율	외부 기관과의 협업 (5점)	○ - ※ *주요 작성내용(사업계획서 상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작성하되, 미흡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기재)* ▲ *고용센터, 자치단체, 지역인자위, 고용존, 인근대학 및 중·고교, 기업 등과의 협업·연계프로그램 운영계획이 구체적 이고 실현가능한지 여부 등*
	지역청년 고용 서비스제공 (5점)	○ - ※ *주요 작성내용(사업계획서 상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작성하되, 미흡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기재)* ※ *지역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자, 다양한 지역 청년에게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이 추진가능성 여부*
특이 사항	가점 등	○ - ※ *주요 작성내용(사업계획서 상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작성하되, 미흡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기재)* ▲ *민간전문기관과의 컨소시엄 없이 대일센터 자체 운영, 여대생 특화프로그램 운영계획, ,신청 전년도 청년드림대학 및 Best Practice 수상대학인지 여부*

서식 6 종합 검토의견서

대학일자리센터 청(대표지청)별 종합 검토의견서

□ 지방청:

추천 순위	대학명	컨소시엄 기관명	종합 검토의견
1			
2			
3			
4			
5			
추천 제외			
추천 제외			
추천 제외			
추천 제외			
추천 제외			
추천 제외			
추천 제외			
추천 제외			

※ 작성방법 : 관할 고용센터의 기초검토서 및 청(대표지청)별 1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종합의견 작성

서식 7 1차 심사결과표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1차 심사결과표

□ 지방청:

연번	대학명	컨소시엄 기관명 (자체 운영 시 우대)	심사항목 및 배점 * ( ) 소형									총점
			심 사 지 표(100점)						가 점(5점)			
			진로 취·창업 인프라 현황	대학 일자리 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 서비스 강화	해외취업 지원역량	청년고용 정책 체감도 제고	외부기관 협업 및 지역청년 고용서비스 제공	민간전문 기관과의 컨소시엄 없이 자체 운영	여대생 특화 프로그램 충실성	청년드림 대학 및 Best Practice 선정 (전년도)	
			20 (20)	10 (20)	35 (35)	10 (10)	15 (15)	10 (-)	2	1	2	
1												
2												
3												
4												
5												
6												
7												
8												
9												
10												

※ 작성방법 : 청(대표지청)별 1차 심사 결과를 본부로 보고하는 서식으로, 심사위원별로 평가한 대학별 심사점수를 심사지표별 해당란에 기재(총점 상위대학 순으로 작성)

서식 8 지원약정서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지원약정서(예시)

*지자체는 희망하는 경우에만 약정서 체결

제1조(목적) __지방고용노동(지)청장(이하 “고용센터”)과_____대학(이하 “지원대학”) 간에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이 협정을 체결한다.

제2조(사업기간) ① “지원대학”이 운영하는 「대학일자리센터」의 사업기간은 20 . . .부터 20 . . .까지 1년간으로 하며, 매년평가를 통하여 계속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③ “고용센터”는 제1항에 의한 사업기간동안 “지원대학”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

제3조(사업 내용) “지원대학”(컨소시엄 기관: *대학 또는 민간기간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기관명 기재*)”은 사업기간 중 「대학일자리센터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 “지원대학”이 제안한 사업계획서 내용 등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워크넷(Work net) 및 자체 구인정보 등을 활용하여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 등 서비스 제공
나. 직업진로지도 서비스 제공
다. 취업·창업 지원서비스 강화
라. 청년고용사업 주요사업 안내
마. 관할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유관기관 협조 등

제4조(당사자의 의무) ① “고용센터”는 “지원대학”이 청년층에 대한 진로상담 및 취업알선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운영과 관련한 “지원대학”의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학”은 사업계획서(구체적 사업계획 별첨)에 따라 관련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고용센터”의 사업계획 추진에 대한 지도·점검 및 위탁사업 운영에 관한 요청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학”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행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학”은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구인·구직자로 부터 회비, 소개비 등 명칭을 불문하고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제5조(사업비의 지원) ① “고용센터”는 “지원대학”이 제1조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정부지원금(이하 “지원금”)를 지급한다.

② “지원대학”은 “고용센터”에게 시행지침에 따라 예산운영계획 및 세부내역 등을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고용센터”는 제2항에 따른 “지원대학”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사용 및 관리 등) ① “지원대학”은 지원금을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 및 시행지침, 사업목적·취지 등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학”은 지원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정부 회계처리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내용 등의 변경) “지원대학”은 사업시행 중에 사업의 취지 등과 관련된 주요한 사업내용 등의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의 취소) “지원대학”이 시행지침 및 지원조건 등을 위반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간전문기관(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이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전문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등 시행지침에서 정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의 반환 및 환수) ① “지원대학”은 사업추진 중에 일부사업을 중단·폐지하거나, 자체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사업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정산하고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학”의 지원금 부당 사용 등에 대해서는 해당금액 환수 및 약정해지 등 시행지침에서 정한 조치기준에 따른다.

제10조(제재) 기타 사업운영 및 지원금 사용 등과 관련한 부당·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시행지침 상의 조치기준에 따른다.

제11조(점검 · 평가) ① “고용센터”는 “지원대학”에 대해 사업 이행실적 파악, 기타 관리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원대학”(컨소시엄 기관을 포함)은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고용센터”는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 · 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대학”(컨소시엄 기관을 포함)”의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원대학”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의무) ① “지원대학”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학”은 매년 3월 중에 해당 연차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보고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포함), 시행지침, 사회통념상 합리적 기준 등에 따라 처리한다.

붙임: 사업계획서 1부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고용센터” 및 “지원대학”이 기명날인 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고용센터)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인)

(대 학) 대학교 총장 (인)

서식 9 약정변경 신청서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약정(내용)변경 신청서

<table>
<tr><td rowspan="2">대 학
현 황</td><td colspan="2">대 학 명</td><td></td><td>대 표 자</td><td></td></tr>
<tr><td colspan="2">주 소</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사업 변경
사항</td><td rowspan="2">변경
내용</td><td>변경전</td><td colspan="3"></td></tr>
<tr><td>변경후</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변경사유</td><td colspan="3"></td></tr>
</table>

위와 같이 년도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

서식 10 지원금 신청서

「대학일자리센터」사업 지원금 신청서

대학현황	대 학 명		대 표 자	
	주 소		사 업 자 등록번호	
	담 당 자	성 명	(전화 :)	
신청금액				
입금계좌	예 금 주 : 은 행 명 : 계좌번호 : ※ e-나라도움 등 전산시스템을 통한 교부 시에는 작성 생략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지원금 통장사본			

위와 같이 20 년도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에 필요한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식 11 국고보조금 교부통지 및 교부조건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ㅇㅇㅇ대학교

1.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사업(대학일자리센터)」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사업명 :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사업(대학일자리센터)

□ 보조사업자 : ㅇㅇㅇ대학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1 . 3. 1. ~ 22 . 2. 28.

○ 사업규모 : ○○천원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고용부)	지방비(지자체)	대학부담금
청년취업진로지원				
(대학일자리센터)	(예시) 600,000	300,000	150,000	150,000

○ 보조비율 : 50%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 사업내용 : 대학 내 취업지원 부서, 여대생커리어센터 등 분절된 대학 취·창업지원 기능을 통합·연계하여 청년에게 원스톱 고용서비스 제공

□ 교 부 목 적 :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수행

□ 예 산 과 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80 사회복지	08D 고용	1000 고용창출 및 훈련	1051 청년진로 및 취업지원	305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320-01 민간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 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6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년 월 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붙 임】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 사업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 하여야 합니다.
6.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에는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7.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이하 “우리부”라 합니다)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집행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계약체결·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4.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 위반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주 이내에 연차사업결과보고서 및 관련 지출증빙자료를 첨부한 연차사업정산보고서를 우리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또는 사업의 폐지 승인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국고보조금과 매칭하는 사업의 경우 자부담 비용을 우선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액(불인정금액 제외) 기준으로 국고/자부담금 매칭 비율 미만으로 자부담금을 집행하는 경우, 이에 미달하는 자부담금 미집행분에 대해서는 환수하여야 합니다.(별도 세입조치)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7.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서식 12 보조사업자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보조사업자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 확인자 'A대학'은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의 보조사업자임을 확인합니다.

2. 확인자 'A대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결정이 취소되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통보받은 일로부터 30일 이내) 할 것을 확인합니다.

> ①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②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③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④ 그 밖에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3. 확인자 'A대학'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 2에 따라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부정수급금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해당 금액을 반환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4. 확인자 'A대학'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보조금의 반환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5. 확인자 'A대학'은 반환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반납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제기하는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위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성 명	(서명)

서식 13 사업정산보고서 및 정산내역서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정산보고서

1. 지원대학 개요

대학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2. 컨소시엄 현황

대학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3. 정산 결과

※ 지출증빙자료 및 세부 집행내역을 첨부하여 별첨의 정산 결과 제출
※ 집행부진시 집행부진 사유 기재

4. 기타 사항

. . .

기관명 :
대표자 : (인)

【붙 임】

○○년도 ○○대학 일자리센터 정산 내역

(단위: 원)

고용센터	대학	예산항목	사업비			사업비 매칭비율		집행액			집행잔액			e나라도움 집행마감				불인정금액 (고용센터)			e나라 도움 국고 보조금 반환액 ⑥ (수정후 국고) (①+②+③+④)	e나라 도움 (수정후) 자기 부담금 잔액	불인정금액 제외 집행인정액			매칭 비율 대비 자부담 집행액 ⑧ (⑦*Ⓑ)	자부담 추가환수액 ⑨ (⑧-Ⓓ)	지자체 부담금		
			국고보조금	자부담	계	국고보조비율Ⓐ	자부담비율Ⓑ	국고보조금	자부담	계	국고보조금①	자부담	계	수익금			발생이자(e나라도움)③	국고보조금④	자부담⑤	계			국고보조금Ⓒ	자부담Ⓓ	합계⑦			지자체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발생액	반환액②	미반환액														
		계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 엑셀파일로 작성·제출

서식 14 정산결과보고서

○○년도 ○○대학 일자리센터 정산 결과 보고(○○청)

(단위: 원)

연번	지방청	센터명	대학명	예산항목	사업비			사업비 매칭비율		집행액			집행잔액			e나라도움 집행마감				불인정금액 (고용센터)			e나라 도움 국고 보조금 반환액 ⑥ (수정후 국고) (①+②+③+④)	e나라 도움 (수정후) 자기 부담금 잔액	불인정금액 제외 집행 인정액			매칭 비율 대비 자부담 집행액 ⑧ (⑦*Ⓑ)	자부담 추가 환수액 ⑨ (⑧-Ⓓ)	지자체 부담금		
					국고보조금	자부담	계	국고보조비율 Ⓐ	자부담비율 Ⓑ	국고보조금	자부담	계	국고보조금 ①	자부담	계	수익금			발생이자 (e나라도움) ③	국고보조금 ④	자부담 ⑤	계			국고보조금 Ⓒ	자부담 Ⓓ	합계 ⑦			지자체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발생액	반환액 ②	미반환액														
				계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 엑셀파일로 작성·제출

서식 15 대학일자리센터 점검표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 점검표

1. 개 요

대 학 명		대 표 자	
대학유형	①일반대학, ②전문대학, ③산업대학	전화번호/FAX	

2. 예산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계	정부지원금	대학부담금	지자체부담금
예 산				
집행액				

3. 점검 내용

구 분	점검결과 및 지적사항
사업추진상황	○ 사업계획서에 따라 적절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 ○ 컨소시엄기관 결격사유 확인 등 관리를 적절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
지원금 관리	○ 지원금의 효율적 집행·관리 여부 - 정부지원금 별도 통장 관리 등 지원금 관리 적정 여부 - 지출 근거서류 보존·관리 상태
기타 특이사항	○ 점검자 의견

이상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점검참여자(대학명:)
직위: _____ 성명: _____(서명)

점검자(고용센터)
직급: _____ 성명: _____(서명)

2021년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연번	지역	고용센터	대학명	소재지	센터 장소	연락처
1	강원	강릉	가톨릭관동대학교	강릉시 범일로 579번길 24(내곡동)	가톨릭관동대학교 요셉관 102-2	033-649-7176
2	강원	춘천	강원대학교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학생성공마루 2층	033-250-7463
3	강원	원주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강원도 원주시 연세대길 1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학생회관 2층	033-760-2882
4	강원	원주	한라대학교	원주시 한라대길 28	한라관 1층	033-760-1154
5	강원	춘천	한림대학교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1	캠퍼스라이프센터 3층	033-248-1085
6	경기	성남	**가천대학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가천대학교 비전타워 B동 1층, 학생서비스센터내	031-750-5833
7	경기	수원	**경기대학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복지관 2층	031-249-9492
8	경기	의정부	경복대학교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 425	창조관 1층	031-570-9826
9	경기	안양	계원예술대학교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66	파라다이스홀 1층	031-596-7553
10	경기	부천	김포대학교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학로 97	호프관 120호	031-999-4262
11	경기	의정부	대진대학교	포천시 호국로 1007	정보전산원 1층 103호	031-539-2866
12	경기	성남	동서울대학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76	동서울대학교 학산도서관 1층, DU일자리센터	031-720-2236
13	경기	부천	부천대학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56번길 25)	밀레니엄관 지하 1층	032-610-0611
14	경기	안양	성결대학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53	재림관 2층	031-467-8238
15	경기	수원	**아주대학교**	경기도 수원시 월드컵로 206	신학생회관 105호	031-219-3297
16	경기	안양	안양대학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37번길 22	아리관 505호	031-463-1304
17	경기	평택	오산대학교	경기 오산시 청학로 45	종합정보관 1층	031-370-2547
18	경기	수원	용인송담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동부로 61	학생회관 9-105호	031-330-9195
19	경기	수원	장안대학교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182	대학본부 G116호	031-299-3331

연번	지역	고용센터	대학명	소재지	센터 장소	연락처
20	경기	성남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청강가창로 389-94	청강홀 1층 취업창업교육지원센터	031-639-4489
21	경기	평택	한경대학교	경기 안성시 중앙로 327	학생회관 1층	031-670-5062
22	경기	안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제2생활관 1층	031-8041-0122
23	경기	고양	한국항공대학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	항공우주센터 311-B	02-300-0028
24	경기	안양	한세대학교	경기도 군포시 한세로 30	본관 3층 301호	031-450-9826
25	경기	평택	한신대학교	경기 오산시 한신대길 137	경삼관 1층	031-379-0057
26	경기	수원	협성대학교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최루백로 72	학생회관 B1	031-299-1478
27	경남	창원	경남대학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	창조관 1층(본관 옆)	055-249-2661
28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학교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501	GNU 컨벤션센터 1층	055-772-0564
29	경남	김해	영산대학교 (동원과기대)	경남 양산시 주남로 288	홍익2관 50 104호	055-380-9160
30	경남	창원	창원문성대학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충혼로 91	8호관 1층	055-279-1057
31	경북	구미	경운대학교	경북 구미시 산동면 강동로 730	중앙도서관 5층	054-479-1126
32	경북	대구	경일대학교	경북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50	07호관 별관 121호	053-600-4111
33	경북	구미	구미대학교	경북 구미시 야은로 37	성실관 1동 201호	054-440-1480
34	경북	대구	대경대학교	경북 경산시자인면 단북1길 65	산학동 306호	053-850-1179
35	경북	대구	대구가톨릭대학교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3-13	B1 207호	053-850-3082
36	경북	대구	대구대학교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진로취업관 2201호	053-850-5604
37	경북	포항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경북 경주시 동대로 123	원효관1층	054-770-2052
38	경북	안동	안동과학대학교	경북 안동시 서후면 서선길 189	학계도서관 1층	054-851-3679
39	경북	안동	안동대학교	경북 안동시 경동로 1375	취업창업진로본부 별관2층	054-820-7075
40	경북	대구	영남대학교	경북 경산시대학로 280	학생지원센터 101호	053-810-1037

연번	지역	고용센터	대학명	소재지	센터 장소	연락처
41	경북	포항	위덕대학교	경북 경주시 강동면 동해대로 261	회당관 1층	054-760-1025
42	광주	광주	광주대	광주광역시 남구효덕로 277	학생회관 1층	062-670-2334
43	광주	광산	광주여대	62396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여대길 40	도서관 1층	062-950-3771
44	광주	광주	**전남대학교**	광주시 북구용봉로77	도서관별관(백도) 1층	062-530-4135
45	광주	광주	조선대학교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서석동)	중앙도서관 1층	062-608-5165
46	광주	광산	호남대학교	62399 광주광역시 광산구 호남대길 120	호남대학교 상지관 (3호관) 1층	062-940-5846
47	대구	서부	계명대학교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대학일자리센터	053-580-6043
48	대구	서부	영남이공대학교	대구시 남구 현충로 170 본관 3층	본관3층	053-650-9145
49	대구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대구시 북구 복현로35	정보관 414호	053-940-5660
50	대전	대전	**목원대학교**	대전시 서구도안북로 88 (도안동	학생회관 N301호	042-829-7155
51	대전	대전	**배재대학교**	대전시 서구 배재로 155-40	스마트배재관 2층	042-520-5521
52	대전	대전	충남대학교	대전시 유성구대학로 99	인재개발원(E5) 205호	042-821-6954
53	대전	대전	한남대학교	대전시 대덕구한남로 70	인사례교양동	042-629-7875
54	대전	대전	한밭대학교	대전시 유성구동서대로 125(덕명동)	S2동 학생회관	042-821-1807
55	부산	북부	경남정보대학교	부산 사상구 주례로 45	래쉬관 1층	051-320-1223
56	부산	부산	경성대학교	부산시 남구 수영로 309	건학기념관 1층	051-663-5351
57	부산	부산	고신대학교	부산시 영도구 와치로 194	문헌정보관 2층	051-990-2139
58	부산	부산	동명대학교	부산시 남구 신선로 428	산학협력관 1층	051-629-0525
59	부산	북부	동서대학교	부산시 사상구 주례로 47	스튜던트프라자 3층	051-320-4838
60	부산	부산	**동아대학교**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하단동)	승학캠퍼스 교수회관 201호 부민캠퍼스 사회과학대학 116호	051-200-6222
61	부산	부산	동의대학교	부산시 부산진구 엄광로 176	창의관 1층	051-890-1064
62	부산	부산	부경대하교	부산시 남구 용소로 45	학술정보관 1층	051-629-6752

연번	지역	고용센터	대학명	소재지	센터 장소	연락처
63	부산	북부	부산과학기술대학교(동주대,부산여대)	부산시 북구 시랑로 132번길 88	취업지원센터 1층	051-330-7299
64	부산	동부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	대학본부 1층	051-509-5023
65	서울	동부	건국대학교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학생회관 204호	02-450-3823
66	서울	북부	국민대학교	서울 성북구 정릉로 77	종합복지관 지하1층	02-910-5983
67	서울	북부	덕성여자대학교	서울시 도봉구 삼양로144길 33	도서관 건물1층	02)901-8626
68	서울	서부	명지대학교	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행정동 1층, 학생회관 4층	02-300-1531
69	서울	북부	삼육대학교	서울 노원구 화랑로 815	학생회관 2층	02-3399-3234
70	서울	서울	상명대학교	서울 종로구 홍지문 2길 20	학생회관 2층 201호	02-2287-7087
71	서울	북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232	제2학생회관 2층 219호	02-970-9005
72	서울	북부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시 노원구화랑로 621	학생누리관 3층	02-970-5080
73	서울	북부	서일대학교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90길 28	배양관 1층	02-490-7253
74	서울	서울	성균관대학교	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25-2	경영관 1층	02-760-1088
75	서울	동부	세종대학교	서울시 광진구능동로 209	학생회관 1층	02-3408-3060
76	서울	서부	숙명여자대학교	서울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학생회관 208호	02-2077-7003
77	서울	북부	인덕대	서울 노원구 초안산로 12	인덕대학교 인관2층	02-950-7082
78	서울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 동대문구이문로107	사이버관 1층 105호	02-2173-2234
79	세종	세종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세종시 세종로 2511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학술정보원 1층	044-860-1092
80	울산	울산	울산과학대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01	1대학관 216호 인재개발처	052-230-0515
81	인천	인천	인하대학교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 100	학생회관 3층 336호	032-860-7082
82	전남	광주	동신대학교	전라남도 나주시 동신대길 9	정보전산센터 1층	061-330-6452
83	전남	목포	**목포대학교**	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프라자60 (3층)	061-450-2946
84	전남	순천	순천대학교	전남 순천시 중앙로 255	산학협력관 205호	061-750-3177

연번	지역	고용센터	대학명	소재지	센터 장소	연락처
85	전남	순천	순천제일대학교	전남 순천시 제일대학길 17(덕월동)	순천제일대학교	061)740-1429
86	전남	광주	전남도립대학교	전남 담양군 담양읍 죽녹원로 152	학생문화복지관 1층	061-380-8408
87	전북	군산	군산대학교	전북 군산시 대학로 558	학생회관 2층	063-469-1928
88	전북	군산	군장대학교	전북 군산시 성산면 군장대길 13	1학구관 3층	063-450-8069
89	전북	전주	우석대학교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443	문화관 1층	063-290-1952
90	전북	익산	**원광대학교**	전북 익산시익산대로 460	학생지원관 1층	063-850-5319
91	전북	전주	전주기전대학교	전북 전주시완산구 전주천서로 267	종합행정동 1층	063-280-5323
92	전북	전주	**전주대학교**	전북 전주시완산구 천잠로 303	스타센터241호	063-220-4653
93	제주	제주	제주대학교	제주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본관동(대학원동)	064-754-2302
94	충남	천안	남서울대학교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대학로 91	학생복지회관 1층	041-580-3168
95	충남	천안	순천향대학교	충남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22	I'Design관	041-530-3070
96	충남	서산	한서대학교	충남 서산시 해미면 한서1로 46	청곡관2층	041-660-1297
97	충남	천안	호서대학교	충남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79번길 20	강석규교육관 1층	041-540-5062
98	충북	청주	서원대학교	충북 청주시 무심서로 377-3	미래창조관 1층 취창업지원처	043-299-8253
99	충북	청주	**청주대학교**	충북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청주대학교 입학취업지원관(03) 2층	043-229-7395
100	충북	충주	한국교통대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대학로 50	종합강의관(W5) 1층	043-849-1451

※ 굵은 표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